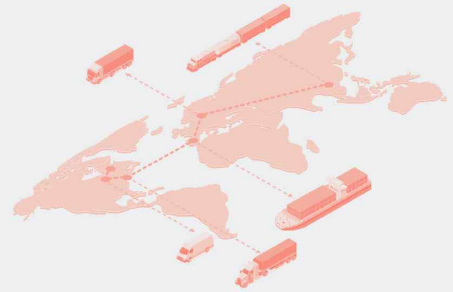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과 소비재 시장 진출 전략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과 소비재 시장 진출 전략



목 차

요약	2
제1장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동향	3
제1절 할랄 개관 및 글로벌 시장 현황	3
제2절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정책 및 제도 체계	6
제3절 할랄 인증 의무화 주요 내용	8
제2장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 운영 현황	15
제1절 할랄 인증 취득 경로별 개요 및 선택 기준	15
제2절 인도네시아 주요 할랄 심사기관의 운영 사례	17
제3절 유통·소매 현장 모니터링	19
제3장 할랄 인증 취득 실무 가이드	23
제1절 할랄 인증 대상 판별 기준	23
제2절 할랄 인증 신청 절차 및 준비 사항	25
제3절 할랄 인증 소요 기간·비용 및 활용 전략	28
제4장 소비재 분야별 할랄 시장 진출 전략	31
제1절 식품·음료	31
제2절 화장품·뷰티	33
제3절 건강기능식품·의약품	35
제4절 생활용품·기타 소비재	37
제5절 외식·서비스	39
제5장 종합 진출전략 및 실행 로드맵	41
제1절 한국 소비재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	41
제2절 현지 유통채널 진입 및 파트너십 구축 전략	42
제3절 단계별 실행 로드맵	43
제4절 종합 시사점	44

요 약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법률

- **(의무화 시행)**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음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주요 생활 소비재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예정
- **(배경)**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인 시장으로, 2014년 「할랄 제품 보증법」 제정 후 제품군별로 할랄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 확대
- **(제재)** 의무 대상 제품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유통되면 서면 경고, 제품 회수,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핵심 내용

- **(핵심 내용)** 의무 대상 제품은 원칙적으로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돼지고기 등 비할랄 원료가 포함돼 인증받을 수 없는 제품은 정부 기준에 따른 비할랄 표시를 부착해야 유통 가능
- **(표기)** 할랄 인증 제품과 적정 비할랄 표시 제품은 모두 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으나, 인증도 없고 비할랄 표시도 없는 제품은 규정 위반에 해당
- **(면제)** 신선 농산물, 천연 수산물 등 별도 면제 품목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나, 첨가제·가공보조제 사용 시 인증 대상에 포함 가능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현지 동향

- **(현지 동향)** 비할랄 표시 제품은 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주요 유통업체는 별도 구역에 진열하거나 취급을 피하는 시장 분위기 형성
- **(바이어)** 일부 현지 바이어와 유통업체는 2026년 하반기부터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의 신규 발주 또는 취급을 중단할 계획이며,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도 할랄 인증 제품의 우선 노출과 검색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
- **(전망)** 할랄 인증 또는 적정 비할랄 표시가 없는 제품은 법적 유통뿐 아니라 바이어 발굴과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한국 기업 진출 유의 사항

- **(선제 대응)** 할랄 인증 의무 해당 여부, 비할랄 원료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할랄 인증 또는 적절한 비할랄 표시 요건을 갖출 필요
- **(파트너 선정)** 인증 취득 지연 방지를 위해 원재료·첨가물·제조공정·포장재의 할랄 적합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등록과 유통 대응 경험을 보유한 수입업자 유통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

제1장.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동향

제1절 할랄 개관 및 글로벌 시장 현황

□ 할랄(Halal)의 정의와 적용 범위 : 식품·화장품·의약품·서비스까지

- (정의)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서비스를 의미, 반대 개념은 하람(Haram)으로 돼지고기와 그 유래 성분, 비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육류, 주류 등이 포함

< 할랄·하람의 주요 카테고리별 비교 >

구분	할랄(허용)		하람(금지)	
육류 및 가금류	•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닭고기, 오리, 칠면조 • 생선 및 해산물 • 할랄 가금류 달걀		• 돼지고기 및 모든 돼지고기 제품 • 멧돼지 •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동물 • 육식 동물(사자, 호랑이, 개, 고양이)	• 맹금류(독수리, 매, 올빼미) • 죽은 동물의 고기(썩은 고기) • 피 • 인체의 일부
지방 및 오일	• 식물성 오일 (팜유,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유) • 어유 • 할랄동물성 지방(소기름, 닭기름)		• 라드(돼지 지방) • 돼지 유래 쇼트닝	• 하람 동물 유래 지방 • 하람 물질로 오염된 모든 기름/지방
유제품	• 허용된 동물의 우유, 치즈, 요거트, 버터 • 할랄 인증 받은 첨가물 및 효소 포함 제품		• 다음 성분을 함유한 유제품: - 돼지 유래 젤라틴, 할랄이 아닌 동물의 레넷 - 하람 유화제	
첨가물 및 원료	• 식물 유래 젤라틴 (한천 Agar, 카라기난 Carrageenan) • 어류 젤라틴 • 할랄 도축된 소에서 추출한 소 젤라틴	• 식물성 효소 • 미생물 유래 효소 (인증필수) • 할랄 인증 유화제	• 돼지 젤라틴 (보통 젤리, 마시멜로, 캡슐에 사용) • 돼지 유래 효소 • 카민/코치닐(E120) - 곤충에서 추출한 적색 착색제	• 할랄이 아닌 동물 유래 첨가물 • 하람 원료 유래 유화제 (돼지 유래인 경우 E471)
알코올 및 음료	• 무알코올음료 • 천연 과일 주스	• 커피, 차 • 알코올 함량이0.5% 미만인 제품 - 자연발효제품은 잔류 알코올 허용	• 모든 알코올 음료 (와인, 맥주, 증류주, 리큐어) • 의도적으로 알코올을 첨가한 음료	• 취하게 하는 음료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	• 식물성 성분 • 하람 원료 미포함 합성 성분 • 할랄 인증 콜라겐 (소/해양)	• 무알코올 또는 승인된 알코올 배합 • 식물성 글리세린	• 돼지 유래 콜라겐 • 비할랄원료에서 추출한 인간 또는 동물 태반 추출물	• 다음에서 유래한 성분: - 돼지, 비할랄 동물, 인체 부위
의약품	• 할랄성분 함유 • 식물성 또는 합성 캡슐(HPMC, 폴롤란) • 어류 젤라틴 캡슐	• 할랄 인증 원료 추출 소젤라틴 • 무알코올 시럽	• 돼지 젤라틴 캡슐	• 다음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돼지 유래 성분, 할랄이 아닌 동물 유래 성분 - 알코올 함량 높은 제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외)

가공 단계	• 해당 원료는 돼지고기 또는 그 유래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교차 사용되는 생산 시설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해당 원료는 첨가제, 가공보조제 또는 생산시설에서 유래한 하람 또는 나지스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돼지고기 또는 그 유래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과 동일 시설에서 제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조업체가 발행한 '돼지 성분 미사용 시설 증명서' 제출이 요구됨	• 돼지고기 또는 그 파생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공용 (교차) 사용되는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원료	• 첨가제, 가공보조제 또는 생산시설에서 유래한 하람 또는 나지스 물질과 혼합된 원료
-------	---	--	--	---

[출처 : 이슬람교 쿠란 발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할랄 인증 제도)** 제품·서비스가 원재료, 제조·가공, 보관 및 유통 과정 전반에서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공인기관이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
 - 원재료 출처·할랄 여부, 제조·가공 공정 중 비할랄 물질과 교차오염 방지, 보관·유통 과정의 분리 관리, 생산 시설의 위생 기준 준수 등 공급망 전반 종합 심사
- **(할랄 인증 적용 품목)** 식품, 음료,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패션, 서비스 등 확대

< 할랄 인증 적용 품목 >



[출처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한국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 ① 할랄 미인증 국내 육류·가금류 → 가공식품 할랄 인증 취득 불가 (호주·뉴질랜드 등 할랄 도축 육류 사용 필요)
- ② 고추장·간장 등 자연발효식품 → 잔류 알코올 존재해도 식약처 기준 범위 내 할랄 인증 취득 가능
- ③ 화장품 알코올 함유 제품 → 인체 건강·안전성 문제 없을 시 별도 함량 제한 없이 인증 가능

□ 글로벌 할랄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글로벌 할랄 시장은 식품·화장품·의약품·패션·여행·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무슬림 소비자 지출액은 지속 증가 전망('23년 2.4조 달러 → '28년 3.3조 달러)

< 2023년 무슬림 소비자 지출액 (단위 : 백만 달러) >

분야	전세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점유율(%)
할랄 식품	1,434,000	159,600	11.1
미디어 및 레저	259,700	24,500	9.4
할랄 화장품	86,660	5,740	6.6
할랄 의약품	107,100	6,330	5.9
모데스트 패션	326,950	17,860	5.5
무슬림 친화 여행	216,900	11,100	5.1
이슬람 금융	492,500	162,200	3.3

[출처 : 2024/2025 글로벌 이슬람 경제 현황 보고서(SGIER),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동남아 주요국 할랄 시장 비교

- 동남아 주요국은 시장 특성과 인증 제도에 따라 차별화된 할랄 산업 기반을 구축
 - (주요국 할랄 시장 특징)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내수시장 기반, 말레이시아는 높은 인증 신뢰도, 태국은 할랄 식품 수출 허브로 경쟁력 강화

<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별 할랄 인증 비교 >

국가명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증 로고				
약칭	BPJPH	JAKIM	MUIS	CICOT
의무여부	의무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인증 기관명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Majlis Ugama Islam Singapura (이슬람종교위원회)	Central Islamic Council of Thailand
법적근거	UU No.33/2014, PP 42/2024	자체 가이드라인	AMLA 88A	이슬람 조직 행정법 BE2540
인증 유효기간	무기한(성분, 공정 변경 X)	2년	1~2년 (인증 유형별 상이)	1~3년
국제위상	세계 3대 할랄 인증	세계 3대 할랄 인증 (국제 인지도 최고)	중동·아세안 상호인정	지역 수준
특징	- 단계적 전품목 의무화 - 수입품 데드라인(26.10.17)	- MYeHALAL 디지털 시스템 - 150개국 수출 기반	- 자발적이나 국제 신뢰도 높음 - 5명 이상 무슬림 직원 의무	- 비무슬림 주도 허브 - CICOT 외에 HSIT 기준 수립 보조

[출처 : 각 할랄 인증 기관 홈페이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유의사항 : 국가별 할랄 인증 상호인정협정 체결 여부 확인

각국의 할랄 인증은 발급 기관이 다르며 한 국가에서 취득한 할랄 인증은 다른 국가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주요국에서 유효한 인증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국 인증기관 간 상호 인정협정¹⁾(MRA)체결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1)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A국 인증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를 B국 인증기관이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기로 협약한 제도, MRA가 체결된 경우, 현지 시스템에 인증서 등록 시 유통 가능

제2절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정책 및 제도 체계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의 법적 여정

- **(법제화)** 1976년 비할랄 표시제를 시작으로 자율 인증을 거쳐 2014년 「할랄 제품 보증법」 제정으로 할랄 인증을 법적 의무로 전환
- **(의무화)** 품목별 단계적 시행 이후 수입 제품 유예기간은 2026년 10월 17일부 종료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법적 여정 >



[출처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주관기관 구조 및 역할 분담 : BPJPH, LPH, MUI

- **(체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은 종교부 산하 3개 기관이 행정·심사·종교적 판정 분담
 - **(기관별 역할)** 할랄제품보증장청(BPJPH)은 신청 접수·인증서 발급·시장 관리 감독, 할랄 심사기관(LPH)은 서류·현장 심사와 공급망 점검, 인도네시아 올라마 협의회(MUI)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할랄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
 - **(주요 할랄 심사기관)** 해외 제조 시설 현장 심사는 해외 심사 자격을 보유한 LPPOM MUI, PT Sucofindo, PT Surveyor Indonesia사 등의 공인 할랄 심사기관이 수행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주관기관 구조 및 역할 >



[출처 : 법률 No.33/2014, 정부령 42/2024,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의 국제적 위상 및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현황

- (시장 위상) 인도네시아는 약 2억 4,000만 명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무슬림 소비 시장으로, 할랄 산업 생태계에서도 주요 국가로 평가
 - 2025년 기준 할랄 경제 규모는 약 3,117억 달러로, 국내총생산의 19.1% 수준
- (상호인정협정)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해외인증 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의 인증서를 현지 시스템에 등록해 인정하는 체계를 운영
 - 2026년 6월 기준 115개 해외 기관과 협정을 체결, 한국에서는 KMF·KHA·BIC·KTC·KIIHCC·GLHAC 등 6개 기관이 포함
 -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웹사이트에서 국가별 체결 현황 확인 가능

※ 상호인정협정(MRA) 관련 유의 사항

- (적용 기준) 상호인정협정은 인증 기관 소재국과 제조사 소재국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적용
 - 예를 들어 한국 소재 제조사가 말레이시아 JAKIM 인증을 보유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 인증을 직접 취득하거나 한국 소재 공인 인증 기관을 통해 재인증 필요
- 해외인증 기관별 인정 품목·협정 유효기간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전 최신 현황 확인 필요

□ 인도네시아 정부의 할랄 산업 육성 전략 및 유통업계 대응

- (정부 대응)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양한 할랄 산업 마스터플랜 및 로드맵 수립을 통해 할랄 인증 의무화 및 할랄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 마련

※ 인도네시아 정부의 할랄 생태계 육성 전략

- ① 인도네시아 할랄 산업 마스터플랜(MPIHI, Master Plan Industri Halal Indonesia) : 할랄 식품·의약품·화장품·관광·패션 등 주요 산업의 생산성·경쟁력 강화와 가치사슬 고도화 추진
- ② 샤리아 경제·금융 마스터플랜(MEKSI 2025~2029, Masterplan Ekonomi dan Keuangan Syariah Indonesia) : 국가중기개발계획과 연계해 서자바·아체 등 지역별 할랄 산업 거점 조성
- ③ 할랄 산업단지(HIZ, Halal Industrial Zone) : 바탐·빈탄·시도아르조에 할랄 전용 제조·물류 거점을 조성해 아세안 할랄 공급망 허브로 육성
- ④ 할랄 산업 발전 로드맵(2025~2029) : 산업부 장관령 제40/2025호에 따라 인증 인프라, 원료센터, 물류시스템, 전문인력 및 인센티브 기반 확충

[출처 : LPPOM MUI, 현지 언론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유통업계 대응) 2026년 10월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주요 유통업체와 수입사를 중심으로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발주 중단을 검토하는 움직임 확산
 - 법적 의무화뿐 아니라 실제 유통망 입점, 거래 유지 측면에서도 할랄 인증 중요성 확대

제3절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

- (법령 체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는 법률·정부령·장관령 및 장관 결정으로 구성된 단계적 법령 체계에 따라 운영
 - 할랄제품보증법(UU No.33/2014): 할랄 인증 의무화, 할랄제품보증장청(BPJPH) 설립, 인증 절차 및 제재의 기본 근거 규정
 - 정부령(PP No.42/2024): 수입 제품 유효기간, 상호인정협정(MRA), 해외 할랄 인증서의 할랄인증통합시스템(SiHalal) 등록 등 세부 시행 기준 규정
 - 종교부 장관 결정(KMA No.748/2021 및 KMA No.944/2024): 의무 인증 대상 품목과 식품·음료 세부 분류 규정
 - 종교부 장관 결정(KMA No.1360/2021): 할랄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원료·품목 규정
- (유의 사항) 관련 법령과 대상 품목은 지속해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장청(BPJPH)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규정 확인 필요

< 할랄 인증 법적 체계 >

법률 (UU)	UU No.33 / 2014 할랄 제품 보장법 (JPH) — 의무화 근거·BPJPH 설립 공포: 2014.10.17 · LN 2014 No.295		UU No.11/2020 & No.6/2023 Cipta Kerja — UU 33/2014 일부 조항 개정 간접 관련 / 2020·2023 공포
정부령 (PP)	PP No.31 / 2019 UU 33/2014 최초 이행령 → PP 42/2024에 의해 실질 대체 구 체계로 일부 개정	PP No.39 / 2021 JPH 운영령 → PP 42/2024로 개정 구 체계로 일부 개정	PP No.42 / 2024 ★ 현행 MRA·수입품 데드라인(Art.160)·SiHalal 등록 의무 규정 공포: 2024.10.16 · JDIH·BPK 등록
종교부 장관 규정 (PMA)	PMA No.26 / 2019 JPH 운영 장관령 — 현재도 regulasi utama로 인용 / PP 42/2024 이후 일부 개정 예정 공포: 2019.07~08월경		
종교부 장관 결정 (KMA)	KMA No.748 / 2021 의무 인증 대상 품목 마스터 리스트 발효: 2021.06.29	KMA No.944 / 2024 식음료 품목 세부 분류 (갱신판) 2024년 발효·현행 적용	KMA No.1360 / 2021 면제 품목(Positive List) 규정 2021년 발효
할랄 보증장 행정 결정	Kepkaban No.22 / 2024 LPK 감사 비용 산정 기준 — 품목 수·SKU·시설 수 차등 적용 2024년 BPJPH 공포		

[출처 : 각 법령,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할랄 인증 관련 주요 법령 >

법령구분	근거 법령
인도네시아 법률 (Undang-Undang RI)	- Undang-Undang No.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 Undang-Undang No. 6 Tahun 2023 -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2 Tahun 2022 Tentang Cipta Kerja
정부 규정 (Peraturan Pemerintah)	- Perpres Nomor 6 Tahun 2023 tentang Sertifikasi Halal Obat, Produk Biologi, dan Alat Kesehatan - Salinan PP Nomor 42 Tahun 2024 tentang Bidang Penyelenggaraan Jaminan Produk Halal

종교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Agama)	- PMA 2 Tahun 2022 tentang Kerja Sama Internasional fix - PMA 8 Tahun 2021 tentang Pengawas JPH - PMA 12 Tahun 2021 tentang Tim Akreditasi LPH - PMA Nomor 13 Tahun 2022 - Pelatihan dan Sertifikasi Kompetensi Auditor Penyelia Halal - PMA 20 Tahun 2021 tentang Sertifikasi Halal UMK - PMA 72 Tahun 2022 - Organisasi dan Tata Kerja Kementerian Agama - PMA 18 TAHUN 2024 ttg Pedoman Formasi JF Pengawas JPH - PMA 18 TAHUN 2024 ttg Pedoman Formasi JF Pengawas JPH
종교부 장관 결정 (Keputusan Menteri Agama)	- KMA 1360 tahun 2021 tentang Bahan yang dikecualikan dari kewajiban bersertifikat Halal - KMA 297 2023 Tim Pelaksana Tugas Komite Fatwa Produk Halal - KMA No. 1103 Tahun 2019 - Penetap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Sebagai Unit Eselon I Pada Kementerian Agama Yang Menerapkan Pola Pengelolaan Keuangan Badan Layanan Umum - KMA No. 541 2022 - Pejabat Pengelola BLU BPJPH - Daftar Bahan Dikecualikan Dari Kewajiban Bersertifikat Halal NEW - KMA 944 tahun 2024 ttg Perubahan atas KMA 748 Tahun 2021 (ttd) - KMA 748 tahun 2021 (search) - Jenis Produk yg Wajib Bersertifikat Halal - KMA 985 Tahun 2024 Inpassing JF Pengawas JPH - KMA 985 Tahun 2024 Inpassing JF Pengawas JPH

[출처 : BPJPH,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의무화 대상 품목 및 단계별 유예기간

- (품목별 단계적 시행) 할랄 인증 의무화는 제품 분야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한국 수출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품,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들의 유예기간은 2026년 10월 17일부 종료
- 식품 분야의 경우 '24년부터 내수 제품 대상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 시행 중이며, 수입품 및 인니 중소 영세 기업 제품의 경우 2026년 10월 17부로 유예 종료

< 제품 유형별 할랄 인증 의무화 유예기간 종료일 >

분야	유예기간 종료일
식품(농식품/음료/기타 가공식품)	2024년 10월 17일 (수입 제품 및 중소 영세 기업 제품(인니)의 경우 2026년 10월 17일)
화장품, 화학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의류, 헤드기어, 액세서리	2026년 10월 17일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용품, 문구류, 사무용품 의료기기(A등급)	
의료기기(B등급)	2029년 10월 17일
의약품(OTC)	
의료기기(C등급)	2034년 10월 17일
항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	

[출처 : 2024년 정부령 42호, 2021년 정부령 제39호]

○ 분야별, 품목별 의무화 제품 목록(26.6월 기준)

- 식품·음료

품목	세부품목 예시
우유 및 유제품	발효유(요거트, 케피어, 쿠미스), 연유·무당연유·UHT 우유·저온살균 우유, 크림(휘핑크림, 사워크림, 멸균 크림), 분유 '및 분말 크림, 치즈(코티지치즈, 모짜렐라, 체다, 브리, 파르메산, 가공치즈), 유제품 아이스크림, 유청 및 유청 제품 등
유지류 및 유화 유지 제품	식물성 기름(카놀라유, 대두유, 팜유, 코코넛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동물성 지방(기버터, 우지, 어유), 버터, 마가린, 쇼트닝, 비유제품 휘핑크림, 멜로린 아이스크림
식용 얼음류 (서벗 및 소르베 포함)	얼음 큐브, 과일 얼음, 코코넛밀크 기반 얼음, 소르베, 셔벗, 빙수, 향미 얼음, 밀크 아이스, 아이스 프리믹스 분말.
가공 과일 및 채소류	과일잼, 과일젤리, 마멀레이드, 처트니, 절임류, 건조당절임·코팅 과일, 과일 퓨레·페이스트·소스, 카라기난·젤리 분말, 김치, 고추장, 발효·조리·칩 형태의 채소류, 땅콩버터.
과자류/캔디 및 초콜릿류	코코아버터·코코아분말·코코아매스, 다크·밀크·화이트 초콜릿, 프랄린, 트러플, 하드캔디·소프트캔디, 토피, 캐러멜, 마시멜로, 마지팬, 풍선껌, 아이싱, 프로스팅, 설탕 기반 토핑류.
곡류 및 곡류 제품	즉석밥·즉석죽·즉석 오트밀, 밀가루·쌀가루·옥수수가루·타피오카가루·사고가루, 변성 전분, 즉석 면, 파스타, 아침식사용 시리얼, 그래놀라, 맥아 추출물, 두부, 간장 베이스 제품, 템페, 낫토, 대두단백(TVP, ISP).
베이커리 제품	흰빵·통밀빵·호밀빵, 바게트, 피타, 찐빵류(만터우, 박파오), 케이크(치즈케이크, 브라우니, 파운드케이크), 페이스트리, 도넛, 와플, 쿠키(나스타르, 카스팅얼), 전통 습식 케이크류(도돌, 모찌, 와직, 라피스 레짓, 비카 암본, 세라비), 비스킷, 웨이퍼, 크래커.
육류 및 육가공품	신선 도체·부분육(소고기, 가금류), 양념육·훈제육·염지육, 육포, 소시지, 미트볼, 너겟, 프라이드치킨, 냉동 치킨 스트립, 콘비프, 통조림 육류, 런천미트, 젤라틴, 콜라겐, 골분·육분.
어류 및 수산가공품	냉동 생선·필레·빵가루 입힌 생선, 생선 통조림(정어리, 참치, 연어), 어묵·볼·생선 소시지·생선 크래커, 펌펙, 가마보코, 게맛살, 생선 육포, 캐비아, 참치·새우·오징어·게·굴 등 포장 수산물, 생선 플레이크, 생선 페이스트, 사시미.
가공란 및 가공란 제품	액란·냉동란·분말란, 조리란·발효란, 염지란, 피단(흑란), 커스터드, 카야잼, 난황분·난백분, 계란 기반 디저트.
설탕 및 감미료류 (꿀 포함)	정제당·원당, 텍스트로스, 과당, 포도당 시럽, 팜슈가(블록·분말·액상), 코코넛 슈가, 전화당, 고과당 시럽, 메이플시럽, 초콜릿 시럽, 과일시럽, 꿀(액상·분말), 아가베 시럽, 꿀 분말, 식품첨가물 또는 기타 원료가 첨가된 액상 꿀.
소금, 향신료, 수프, 소스 및 단백질 제품	요오드 첨가 소금·조미 소금, 허브 및 향신료 분말(고추, 후추, 생강, 계피, 고수, 육두구), 즉석 조미료·부용 큐브, 마요네즈, 샐러드드레싱, 칠리소스, 땅콩 소스, 굴 소스, 간장, 된장, 피시 소스, 즉석 수프, 육수, 치킨 에센스.
특수 영양용 가공식품	영아용 조제분유, 후속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영유아 보완식(MP-ASI), 당뇨·신장질환·대사질환·영양실조 환자용 의료 식품(PKMK), 스포츠음료, 임산부·수유부용 음료, 체중 조절용 식품.
즉석 섭취 스낵류	감자칩, 카사바칩, 팝콘, 쌀과자, 비스킷, 웨이퍼, 크래커, 압출 스낵, 구운 견과류·튀긴 견과류, 생선 기반 크래커, 감자·구근류·곡류·밀가루 또는 전분으로 만든 가공식품.
즉석 섭취 식품	쌀 기반 식사류, 면 기반 식사류, 파스타 기반 식사류, 감자 기반 식사류, 수프 기반 식사류, 채소 기반 식사류, 빵 기반 식사류, 구근류 기반 식사류.
식음료 서비스 제공업체	레스토랑, 구내식당·카페테리아, 소규모 음식점, 노점·음식 판매점, 외식 매장, 케이터링 서비스.

품목	세부품목 예시
식품첨가물 및 기타 원료	산화방지제(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로즈마리 추출물), 유화제(레시틴, 펙틴, 모노·디글리세라이드), 감미료(소르비톨, 스테비아,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착색료(커큐민, 캐러멜,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리보플라빈), 보존료(니신, 나타마이신), 증점제·안정제(잔탄검, CMC, 젤란검), 향미증진제(MSG, 이노신산이나트륨·구아닐산이나트륨), 베이커리 원료(빵가루, 프리믹스, 빵 충전제, 광택제, 바닐라, 제비집).
가공 음료류	미네랄워터·탈염수·산소수·탄산수·고pH 음용수, 과일주스(사과, 오렌지, 망고, 레몬, 패션프루트, 용과 등), 채소주스(당근, 토마토), 농축주스, 과일 넥타, 탄산음료(콜라, 크림소다, 진저에일, 레모네이드), 향미음료·젤리음료, 유음료(향미우유, 요거트음료, 라씨, 유청음료), 커피(분쇄커피, 인스턴트커피, 디카페인커피, 혼합커피), 차류(홍차, 녹차, 허브차), 식물성·향신료 음료.
음료 원료	음료 프리믹스.

- 의약품

품목	세부품목 예시
전통 의약품	자무(Jamu, 인도네시아 전통 생약), 표준화 생약제제, 생약 기반 의약품, 천연 추출물 제제, 수입·라이선스 전통 의약품.
건강 기능 보조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효소, 식이섬유, 분리물, 대사산물 또는 합성 화합물을 함유한 보충제(식물성 원료와 혼합 가능), 건강 기능 보조제 원료.
의약외품	의약외품(예: 기능성 치약, 기능성 샴푸, 제산제, 진통 밤/연고류).
일반의약품	녹색 라벨 및 검은색 테두리 표시가 있는 모든 의약품.
제한적 일반의약품	제한적 일반의약품(파란색 라벨), 전문의약품(빨간색 K 표시), 마약류 및 향정신성
전문약품, 의약품 원료	의약품, 의약품 원료(주성분, 부형제).

- 의료기기

품목	세부품목 예시
의료기기	임상화학 장비, 혈액학 장비, 면역·미생물 진단기기, 마취과, 심장내과, 치과, 이비인후과, 위장·비뇨기과, 신경과, 산부인과, 안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및 수술용 의료기기 ※ 동물성 원료로 제조되었거나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에 한함

- 화장품

품목	세부품목 예시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베이비 로션·크림, 보습제, 나이트크림·데이크림, 자외선차단제, 미백 제품, 주름개선 제품), 페이스 마스크, 파운데이션·컨실러, 페이스 파우더, 목욕비누(고체·액상), 향수류(코롱, 오드뚜왈렛, 퍼퓸), 목욕용 제품(목욕 거품제, 배스솔트), 데오도란트·발한 억제제, 헤어케어 제품(샴푸, 컨디셔너, 염모제, 헤어토닉), 면도용 제품, 아이메이크업 제품(아이섀도, 아이라이너, 마스크라), 립케어 제품(립컬러, 립글로스), 구강케어 제품(치약, 구강청결제, 치아미백제), 네일케어 제품(네일컬러, 베이스코트·탑코트, 큐티클 제거제), 여성청결제 등 위생용 제품, 셀프 태닝 제품
화장품 원료	화장품 제조 배합에 사용되는 원료 성분.

- 화학제품

품목	세부품목 예시
화학제품	가공보조제
기타 화학물질	연마제, 활성탄, 향료, 향미료, 계면활성제, 킬레이트제, 혼탁제, 완충제, 발효배지, 카페인 등 식품·음료·의약품·화장품 관련 화학물질.

- 바이오·유전자 변형 기반 제품

품목	세부품목 예시
바이오 기반 제품	단일클론항체, 호르몬, 줄기세포 제품, 유전자치료제, 백신, 면역혈청, 치료용 단백질, 아미노산, 펩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핵산, 미생물 배양물(건조·반건조·액상·압축 제빵효모, 누룩균, 타우초 효모), 재조합 DNA 등 식품·음료·의약품·화장품 관련 바이오 기반 제품.
유전자 변형 기반 제품	재조합 DNA 제품, 줄기세포 이식 제품, 복제 제품, 하이브리도마·세포융합 제품, 플라스미드 기술 제품 등 식품·음료·의약품·화장품 관련 제품.

- 패션제품

품목	세부품목 예시
의류 및 의복류	의류, 속옷, 양말, 재킷 및 기타 의복류 ※ 동물성 원료로 제조되었거나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에 한함
머리 착용 제품	캡, 모자, 베일·머리 스카프, 헬멧 및 기타 머리 착용 제품 ※ 동물성 원료로 제조되었거나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에 한함
액세서리류	반지, 시계, 귀걸이, 팔찌, 머리끈, 벨트, 지갑, 가방, 신발, 샌들, 안경테, 브로치, 목걸이 ※ 동물성 원료로 제조되었거나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에 한함

- 생활소비재

품목	세부품목 예시
가정용 위생·보건용품	티슈 및 솜, 세탁용 제품, 가정용 세정제, 영유아·산모용 케어 제품, 방부제, 소독제, 방향제, 가정용 살충제 ※ 동물성 원료로 제조되었거나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에 한함
가정용품	가구, 식기류(숟가락, 포크, 접시, 그릇, 유리컵, 칼), 도자기, 브러시 ※ 동물성 원료로 제조되었거나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에 한함
이슬람 예배용품	기도 매트, 묵주, 사롱, 여성용 기도복 ※ 동물성 원료로 제조되었거나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에 한함
제품 포장재	플라스틱 포장재, 종이 포장재, 폴리스티렌 폼, 알루미늄 포일 ※ 동물성 원료로 제조되었거나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에 한함
문구 및 사무용품	잉크, 접착제, 꾸란 인쇄용지, 볼펜 ※ 동물성 원료로 제조되었거나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에 한함
소비재 원료	동물 털, 동물 가죽·피혁 및 기타 구성 원료.

- 서비스

품목	세부품목 예시
도축 서비스	가축 도축장(RPH), 가금류 도축장(RPU), 동물 도축시설(TPH), 가금류 도축시설(TPU)
가공 서비스	식품·음료·의약품·화장품 가공, 섬유 및 가죽 가공, 목재 및 종이 가공, 유지·화학·제약 가공, 고무 및 플라스틱 가공
보관 서비스	고체 제품 보관, 액체 제품 보관, 가스 제품 보관, 냉장·냉동 보관창고
포장 서비스	식품·음료·의약품·화장품 제품의 포장 서비스
유통 서비스	육상 운송, 해상·수상 운송, 항공 운송 ※ 식품·음료·의약품·화장품 관련 제품에 한함
가공·조리 없는 판매점	소매점, 현대식 시장·쇼핑몰 내 매대, 전통시장 내 상점·키오스크 ※ 식품·음료·의약품·화장품 관련 제품에 한함
가공·조리 없는 제공 서비스	야외 식사 제공(알라카르트), 도시락, 포장·테이크아웃 식사, 테이블 서비스 ※ 식품·음료·의약품·화장품 관련 제품에 한함

[출처 : KMA 944/2024, KMA 748/2021]

□ 면제 대상 품목 범위

- **(면제 기준)** 종교부 장관 결정(KMA No.1360/2021)에 따라 비할랄 물질의 혼입 위험이 낮은 천연·미가공 원료는 할랄 인증 의무에서 제외
 - 첨가제·가공보조제 추가 또는 추가 가공이 이루어질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유통 요건)** 면제 목록에 포함된 원료는 자연 상태 또는 최소 가공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할랄 인증서 없이 수입·유통 가능
- **(면제 목록)** 할랄 인증 면제 품목은 포지티브 리스트에 따라 구분

< 할랄 인증 면제 리스트(포지티브 리스트, 26.6월 기준) >

제품	면제 근거	세부 예시
식물성 원료 (비가공)	자연에서 직접 유래하며, 화학적 변형이나 첨가물이 없는 원료	신선 과일, 신선/건조채소, 곡물(귀리, 밀, 옥수수), 괴경류, 견과류, 해조류, 순수 코코넛 워터, 코코아 파우더, 순수 에센셜 오일(계피, 오렌지, 페퍼민트 등)
비 도축 동물 유래 제품	의식적 도축이 필요 없는 할랄 동물 유래 또는 모든 해산물	신선 우유, 신선 계란, 꿀, 해수 및 담수 어류 전 품목(신선, 냉동, 염장 포함)
자연 미생물 발효 원료	전통 발효 식품으로, 비할랄 배지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 발효 공정	템페, 대두 발효 부산물(온콤), 발효 카사바/참쌀(타페), 발효 물소 우유(다디), 조류(스피룰리나, 클로렐라)
광물 및 무기 화학 물질	천연 광물에서 추출·정제되거나 무기 합성으로 생산된 물질	(광물) 소금(NaCl), 산화마그네슘, 산화아연,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 카올린, 펄라이트, 파라핀, 석회석 (화학물질) 암모니아, 소르빈산, 알긴산, 이산화규소, 산화칼슘
저위험 가공 원료	제조 과정에서 비할랄 오염 위험이 없고, 원산지 및 공정이 통제된 원료	(의료/섬유) 흡수성 거즈, 순면, 면 크레페 봉대 (고분자) CMC, Na-CMC 및 합성 고분자(PE, PS, PVC, PVA, 폴리우레탄, 폴리에테르)
천연 수원(水源)	화학 첨가 없이 원수 상태 또는 물리적 처리만 거친 물	샘물, 지하수, 주사용수(의료용), 순수한 물로 만든 얼음

[출처 : KMA 944/2024, KMA 748/2021]

※ 면제 품목 관련 주의 사항

- 원료 중 어느 하나라도 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첨가제(착색제, 안정제 또는 향료)나 가공보조제가 추가 가공된 경우, 즉시 "면제" 자격을 상실 하며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함. 예를 들어, 신선 원유는 면제 대상이지만, 향료나 안정제가 첨가되어 가공된 우유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함.
- 화학물질(예: 염화나트륨)이 단독 소비자 제품(식용 소금)으로 판매될 때도 할랄 인증서가 필요함. 이 면제 조항은 주로 생산 공정에서 원료 또는 성분으로 사용될 때 적용
- 원료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수출업체는 해당 원료가 비할랄 오염 없이 천연 원료에서 유래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품 사양서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 면제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품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미인증 제품에 대한 제재 규정

- (제재 규정) 「할랄제품보증법」(UU No.33/2014)과 정부령(PP No.42/2024)은 인증 의무 대상 제품을 할랄 인증 또는 적정 비할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경우 행정·형사 제재 적용
 - 위반 시제품 회수, 유통 중단,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제재 적용 가능

< 인증 미취득, 기타 제품에 대한 제재 사항 >

위반사항	제재유형	제재 세부 사항	법적 근거
적절한 라벨링 없이 미인증 제품을 유통할 경우	행정	서면 경고→ 제품 유통 중단→ 일시 영업 정지→ 영업 면허 취소	법률 제33/2014호 제56조
허위 할랄 표시를 하거나 할랄 라벨을 오용할 경우	형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 또는 (20억루피아) 이하의 벌금	법률 제33/2014호 제56조
SiHalal 시스템에 외국 할랄 인증서를 미등록한 경우	행정	제품이 규정 미준수 판정을 받을 시; 시장에서 회수 의무가 있으며 수입업자가 전적인 책임을 짐	정부 규정 제42/2024호 제160조
라벨 부착 없이 Non-Halal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행정	제품 리콜 및 관련 감독 당국에 대한 의무적 통지	법률 제33/2014호 및 정부 규정 제42/2024호

[출처: 법률 제33/2014호 (제56조-제57조) 및 정부 규정 제42/2024호]

제2장.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 운영 현황

제1절 할랄 인증 취득 경로별 개요 및 선택 기준

□ 할랄 인증 취득 방법 1 : 한국 할랄 인증기관 인증 후 인도네시아에 재등록

- (취득 방식)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이 인정한 한국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취득한 후, 할랄인증통합시스템(SiHalal)에 해외 인증서를 등록하는 방식
 - 등록 완료 시 인도네시아 내 유통 효력이 발생하며, 한국 인증기관의 할랄 표시 라벨과 할랄제품보장청(BPJPH) 해외인증 등록번호를 제품에 함께 표기
- (기간·비용) 해외인증서 등록 비용은 인증서당 80만 루피아이며, 서류 완비 시 약 15~20일 소요
 - 한국 인증서 갱신 주기와 상호인정협정(MRA) 유효기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
- (적합 기업) 인증 품목 수가 적거나 시험 판매 단계인 기업, 현지 대응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

□ 할랄 인증 취득 방법 2 :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인증서 직접 취득

- (취득 방식) 할랄제품보장청(BPJPH) 공인 할랄 심사기관(LPH)을 선정해 신청한 후 현장 심사, 제품의 할랄 적합성 판정 및 할랄 인증서 발급 절차를 진행
 - 모든 할랄 인증 의무 대상 품목에 적용할 수 있으며, 원재료와 생산 공정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인증 효력은 유지
- (신청·심사) 해외 기업은 현지 수입업자 또는 공식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며, 심사원이 한국 생산 시설을 방문해 현장 심사 시행
 - 심사원의 항공료·숙박비·비자비·체재비는 신청 기업이 부담
- (비용) 등록·심사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및 컨설팅비 등 포함 시 단일 시설·단일 품목군 기준 총비용이 2,000만 원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BPJPH 등록 수수료(12.5백만 루피아), LPH 심사수수료(가공식품 6.4백만 루피아·화장품 5.9백만 루피아 등 품목별 상이), 감사원 출장비, 컨설팅비 별도 소요
- (적합 기업) 인증 대상 제품이 많거나 장기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해외인증 상호 인정 범위가 제한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등에 적합

□ 두 경로의 비교 및 선택 기준

- (선택 기준) 두 경로는 소요 기간, 비용, 적용 범위 및 인증 유지 방식이 상이하므로 제품 수와 시장 진출 전략에 따라 선택 필요
 - 제품 수가 적고 시험 판매가 목적이면 한국 인증 후 현지 등록 방식이 유리
 - 제품 수가 많거나 장기 진출을 추진하거나 인정 범위가 제한된 품목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직접 인증 방식이 유리

< 두 인증 경로 주요 비교 >

구분	1) 한국 할랄 인증기관 인증서 취득 후 → BPJPH에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	2)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인증 직접 취득
소요기간	- 할랄 인증 취득까지 약 2~3개월, BPJPH에 해외 할랄 등록 기간 약 15~20일 소요 (서류 완비 기준)	- 최소 3~4개월 (서류 완비기준)이나 LPH 감사원의 출장 일정 등으로 지연 가능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 유효기간 1~3년마다 인증 갱신 등 절차 필요 (인증기관별 상이)	- 제품 성분 또는 생산 공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별도 만료일 없음
적용 범위	- 상호인정협정 체결 범위 내 품목만 가능, 한국 할랄 인증 기관 별 적용 범위 상이	- 모든 의무 대상 품목
라벨 표기	- 한국 할랄 인증 기관 라벨+ BPJPH 등록 번호 병기 - 해외 할랄 인증 라벨 표기 예시 사례 [출처 : PT Green Nature Farm]	- BPJPH 할랄 라벨 단독 사용
예상가격	- 한국 할랄 인증 취득 : 인증 기간, 품목별 상이 (각 인증기관 별도 문의 필요) - BPJPH 해외 할랄 등록(신고) 비용 : 800,000 루피아 (약 7~8만원)	- BPJPH 등록 수수료 : 12.5백만 루피아(약 1.1백만원) - LPH 심사 수수료 : 가공식품(6.4백만 루피아), 화장품(5.9백만 루피아) - 감사원 출장 비용 : 항공임+숙박+비자+체류기간 식대 등 - 컨설팅 및 대행비 별도로 소요되며 전체 비용 고려 시, 총 2천만원 이상 소요 예상 * 실무적으로 1개 카테고리 기준, 최대 50개 품목까지 기본 요금으로 산정됨
바이어 수요	- 인니 수입업자(바이어) 입장에서 BPJPH 해외 할랄 등록 비용만 부담하면 되어 한국 할랄 인증 기관 인증을 취득한 후 해외 할랄을 등록하는 절차 선호	- 품목수가 많은 기업 경우 인니 할랄 인증서가 유리(유효기간 없으며, 50개 제품까지 같은 카테고리 경우 기본 요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출처: 법률 No.33/2014, 정부령42/2024, LPH 인터뷰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인도네시아 공인 한국 할랄 인증기관 현황 및 상호인정 범위

- **(공인기관 현황)** 2026년 8월 기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한국 할랄 인증기관은 총 6개
 - 기관별 인정 품목과 협정 유효기간이 상이하며, 협정이 만료될 경우 해당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의 인도네시아 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갱신 일정 관리 필요
- **(최신 현황 확인)** 상호인정협정 체결 기관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BPJPH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인정기관 목록과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 필요

< BPJPH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한국 할랄 인증기관 리스트 및 등록 현황('26.8.5일 기준) >

로고	기관명	인증 범위	유효기한	등록 인증서 수	등록 제품 수
	한국할랄산업진흥원(KMF)	식품,음료,도축서비스	2027-11-14	288	1,401
	한국할랄인증원(KHA)	식품,음료,화장품,화학제품, 생활용품	2027-11-14	25	613
	비아이씨할랄코리아(BIC)	식품, 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관련 보관·유통 서비스	2028-10-29	9	55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활용품	2028-12-10	1	3
	한국-인도네시아 통합할랄협력센터(KIIHCC)	의약품,화장품	2029-06-20	-	-
	지엘할랄인증센터(GLHAC)	식품,음료,화장품,생활용품	2030-04-16	-	-
합 계				323	2,072

[출처 : BPJPH,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제2절 인도네시아 주요 할랄 심사기관 운영 사례

□ 해외 심사 가능 주요 할랄 심사기관 3사 비교

- **(기관 선정)**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26.6월 기준 약 129개의 공인 할랄 심사기관(LPH)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해외 현장 심사 자격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 해야 함
 - 대표 기관 : LPPOM MUI, PT Sucofindo, PT Surveyor Indonesia 등
- **(공동 심사)** PT Sucofindo와 PT Surveyor Indonesia는 한국·중국 기업 해외 심사 경험 보유, 복수 기업이 공동 심사 진행 시 심사원 비용 분담 및 비용 절감 가능
- **(기관별 강점)** LPPOM MUI는 인도네시아 ulama 협의회(MUI)와의 연계로 제품의 할랄 적합성 판정 절차에 강점 보유, 한국에도 지사가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재료 출처 확인 지원도 가능

< 인도네시아 주요 할랄 심사기관 LPH 3사 비교 >

구분	LPPOM MUI	PT Sucofindo	PT Surveyor Indonesia
설립 배경	MUI 산하 할랄 전담 심사기관 (1989년 설립)	인도네시아 국영 검사·인증기관	인도네시아 국영 감사·인증기관
운영 주체	MUI (인도네시아 올라마 협의회)	국영기업부(BUMN) 산하	국영기업부(BUMN) 산하
해외 심사 경험	풍부함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	한국 기업 심사 다수 경험	한국 기업 심사 다수 경험
주요 강점	MUI와의 긴밀한 연계· 종교적 판단 신뢰도 높음, 한국 지사 보유	식품·화학 분야 기술 심사 역량 강점	공급망·원재료 추적성 심사 역량 강점
소통 가능 언어	영어 소통 가능	영어 소통 가능	영어 소통 가능

[출처: 각 기업 인터뷰, BPJPH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공통 심사 기준

- (심사 체계) 할랄 심사기관(LPH)은 기관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SJPH, Sistem Jaminan Produk Halal)에 따라 서류·현장 심사를 시행
 - 원재료·첨가물의 할랄 적합성, 비할랄 물질과의 교차오염 방지, 생산 시설의 분리·위생 관리, 할랄 감독관 지정, 원재료 추적성 및 공급망 관리 체계 등을 종합 점검
- (기존 인증과의 차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나 국제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을 보유한 기업도 할랄 전용 공정 흐름도와 주요 관리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야 함
 - 기존 품질관리 문서·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 문서 간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문서와 실제 공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나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 주요 심사 항목 >

단계 구분	세부 내용
원재료 및 공정 심사	모든 원재료·첨가물·가공보조제의 할랄 여부 확인, 원재료 공급업체의 할랄 인증 보유 여부, 비할랄 물질과의 교차오염 방지 체계 구축 여부
생산 시설 심사	할랄·비할랄 제품 간 생산라인 분리 여부, 세척·위생 관리 기준 준수 여부, 할랄 전용 설비 또는 공용 설비의 세척 절차 적정성
문서 심사	SJPH 매뉴얼 수립 여부, 할랄 감독관(Penyelia Halal)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원재료 추적성 기록 관리 체계
공급망 심사	상류 공급업체의 할랄 인증 보유 여부, 원재료 출처 추적 가능 여부, 공급업체 변경 시 재심사 절차 이행 여부

[출처: 각 기업 인터뷰, BPJPH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할랄 인증 심사 시 한국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및 대응 방안

- (사전 점검) 공식 심사 전 사전 진단(Pre-audit)을 활용하면 서류·공정상 미비점을

조기에 확인해 심사 지연과 시정조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PT Sucofindo와 PT Surveyor Indonesia 등 주요 할랄 심사기관에서 할랄 인증 진행 전 사전 진단 서비스 제공
- **(부자재 관리)** 포장용 접착제·코팅제, 생산 시설 세정제 및 제품 접촉 자재도 심사 대상에 포함
 - 관련 자재를 누락해 심사 후반에 시정조치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원재료뿐 아니라 포장재·부자재까지 사전 점검 필요

＜ 한국 기업 주요 심사 문제 유형 및 대응 방안 ＞

문제 유형	주요 원인	대응 방안
원재료·첨가물 할랄 미확인	젤라틴·E471·E120·알코올 향료 등 위험 원료 사전 점검 미흡	심사 전 전 원재료 시험성적서 수집 및 위험 원료 전수 점검
서류·공정 불일치	HACCP·ISO 문서와 실제 공정 간 불일치 /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체계 전용 문서 미비	할랄 전용 공정 흐름도·중요관리점(CCP) 재식별 사전 준비
할랄 감독관 미지정	감독관 미지정 또는 할랄인증시스템(SiHalal) 미숙지로 절차 지연	심사 착수 전 감독관 지정 및 할랄인증시스템(SiHalal) 교육 선행
공급업체 정보 제공 거부	원료 배합·비율 등 영업 비밀 이유로 협조 거부	LPH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후 상류 공급업체 직접 확인 진행
포장재·부자재 할랄 미확인	젤라틴 성분 접착제 등 포장재가 심사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함	포장재·접착제·코팅제 등 제품 접촉 자재 전수 사전 확인
국내 원재료 공장 할랄 미인증	한국 원재료 공급사 대부분 할랄 인증 미취득	할랄 인증 대체 공급업체 발굴 또는 공급사 동반 인증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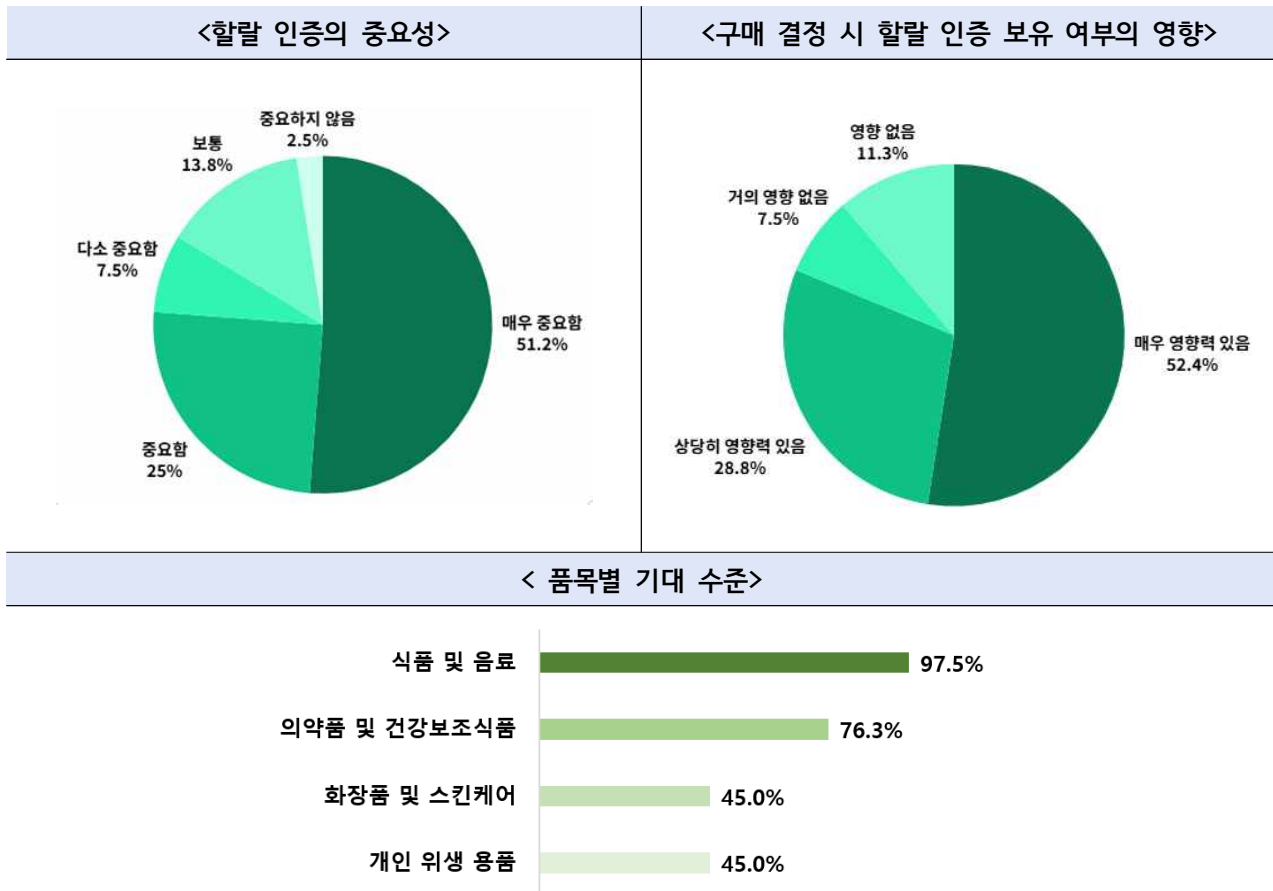
[출처: PT Sucofindo·PT Surveyor Indonesia 인터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제3절 유통·소매 현장 모니터링

□ 인도네시아 소비자 할랄 인식 수준 및 구매 행동 분석

- **(구매 영향)**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이 2025~2026년 인도네시아 도시 거주 20~39세 소비자 80명을 조사한 결과, 할랄 인증이 제품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 조사 대상은 무슬림 68명과 비무슬림 12명으로 구성
- **(적용 품목 확대)** 할랄 인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식품·음료뿐 아니라 의약품·화장품·개인 위생 용품으로 확대
 - 응답자의 90%는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할랄 인증이 필요한 주요 이유로 응답
- **(신뢰 지표)** 비무슬림 응답자의 45.5%도 할랄 인증이 제품 신뢰도를 높인다고 평가
 - 할랄 인증이 종교적 기준을 넘어 원재료의 투명성과 생산 위생을 보여주는 신뢰 지표로 기능

＜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할랄 인증 인식 설문조사 결과 ＞



[출처: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소비자 설문조사 (n=80, 무슬림 68명·비무슬림 12명)]

□ 소매업체 유형별 할랄·비할랄 제품 진열·표시 실태

- **(진열 현황)**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의 현장 조사 결과, 주요 소매업체는 업태와 고객층에 따라 할랄·비할랄 제품의 표시 및 진열 방식을 다르게 운영
 - 적정 비할랄 표시를 부착한 제품은 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일반 제품과 분리되거나 매장 안쪽에 배치되는 등 판매·노출 측면의 제약이 확인됨
- **(유통업체 대응)** 일부 주요 유통업체는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의 발주 중단을 검토하거나 거래업체에 인증 취득을 요구하는 추세
 - 이에 따라 비할랄 표시를 통한 법적 유통 가능 여부와 별개로, 일반 유통망 입점과 거래 유지를 위해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확대
- **(한국 제품 이미지)** 일부 매장에서는 한국산 돼지고기 함유 제품을 별도 구역에 일괄 표시하는 사례가 확인됨
 - 이러한 진열 방식은 한국산 제품 전반이 비할랄 제품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제품별 정확한 표시와 선제적 할랄 인증을 통한 이미지 관리 필요

< 주요 소매업체별 비할랄 제품 진열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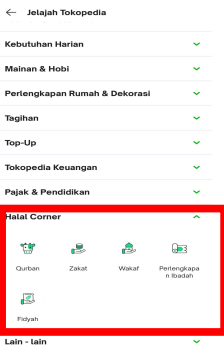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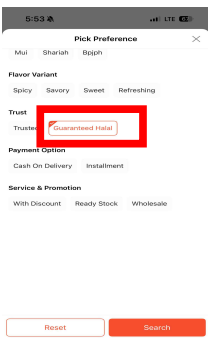
유통망 진열 현황	내용	유통망 진열 현황	내용	유통망 진열 현황	내용
	- 유통망 특징 : 프리미엄 소매점 - 진열 방식 : Non Halal Certified 표기, 별도 진열 - 할랄 인증 미취득 제품임을 명확히 고지		- 유통망 특징 : 프리미엄 수입 식품 슈퍼마켓 - 돼지 함유 제품으로 표기 - 별도 진열		- 유통망 특징 : 한인 마트 - Non Halal Food로 표기 - 별도 진열
					

[출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온라인 유통 플랫폼 할랄 인증 요구 현황

- (플랫폼 운영) 인도네시아 주요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할랄 인증 여부가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검색·표시 기능도 확대
 - 인니 주요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인 Tokopedia와 Shopee는 할랄 필터와 인증 배지를 운영 중, 미인증 제품은 필터 적용 시 검색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인증 정보 공개) 2025년 BPJPH 제7호 회람에 따라 할랄 인증기업은 마켓 플레이스·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채널에 인증 현황을 공개해야 함
 -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할랄 인증 보유 여부가 소비자와 유통업체에 더욱 명확히 노출되는 환경 조성
- (바이어 대응)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인터뷰 결과, 일부 바이어는 할랄 인증이 없는 한국 제품에 대해 2026년 하반기부터 발주 중단 방침을 통보
 - 온라인 노출과 거래 유지 측면에서도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확대

< 주요 온라인 유통망별 할랄 필터 적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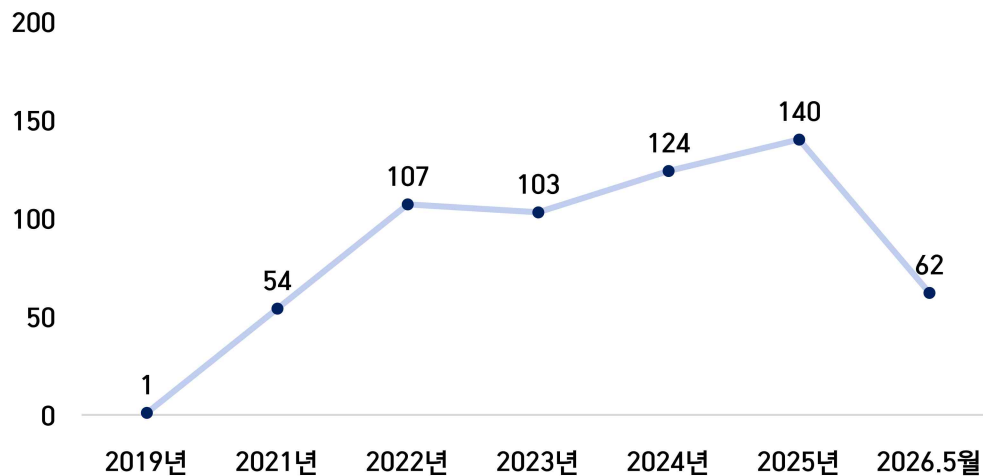
유통망명	Tokopedia	Shopee
사례		
설명	할랄 코너 별도 운영	할랄 인증 필터 운영
		할랄 배지 부착 제품 썸네일

[출처: Tokopedia, Shopee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한국 제품 등록 현황

- **(취득 경로)** 2026년 5월 기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취득 후 해외 할랄 인증을 등록하는 방식보다는 인도네시아 할랄 심사기관(LPH)을 통한 직접 인증 방식을 더 많이 활용
- **(등록 실적)** 인도네시아 할랄 심사기관(LPH)을 통해 한국 기업 306개사의 6,991개 제품에 대해 총 591건의 인증서가 발급
 - 한국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현지에 등록한 해외 할랄 인증서는 총 291건이며, 등록 제품 수는 1,485개
- **(산정 기준)** 하나의 인증서에는 동일 브랜드·동일 제품군에 속하는 여러 제품을 함께 등록할 수 있어 인증서 수와 제품 수에는 차이가 발생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취득 한국 제품 인증서 수 동향 >



[출처: BPJPH,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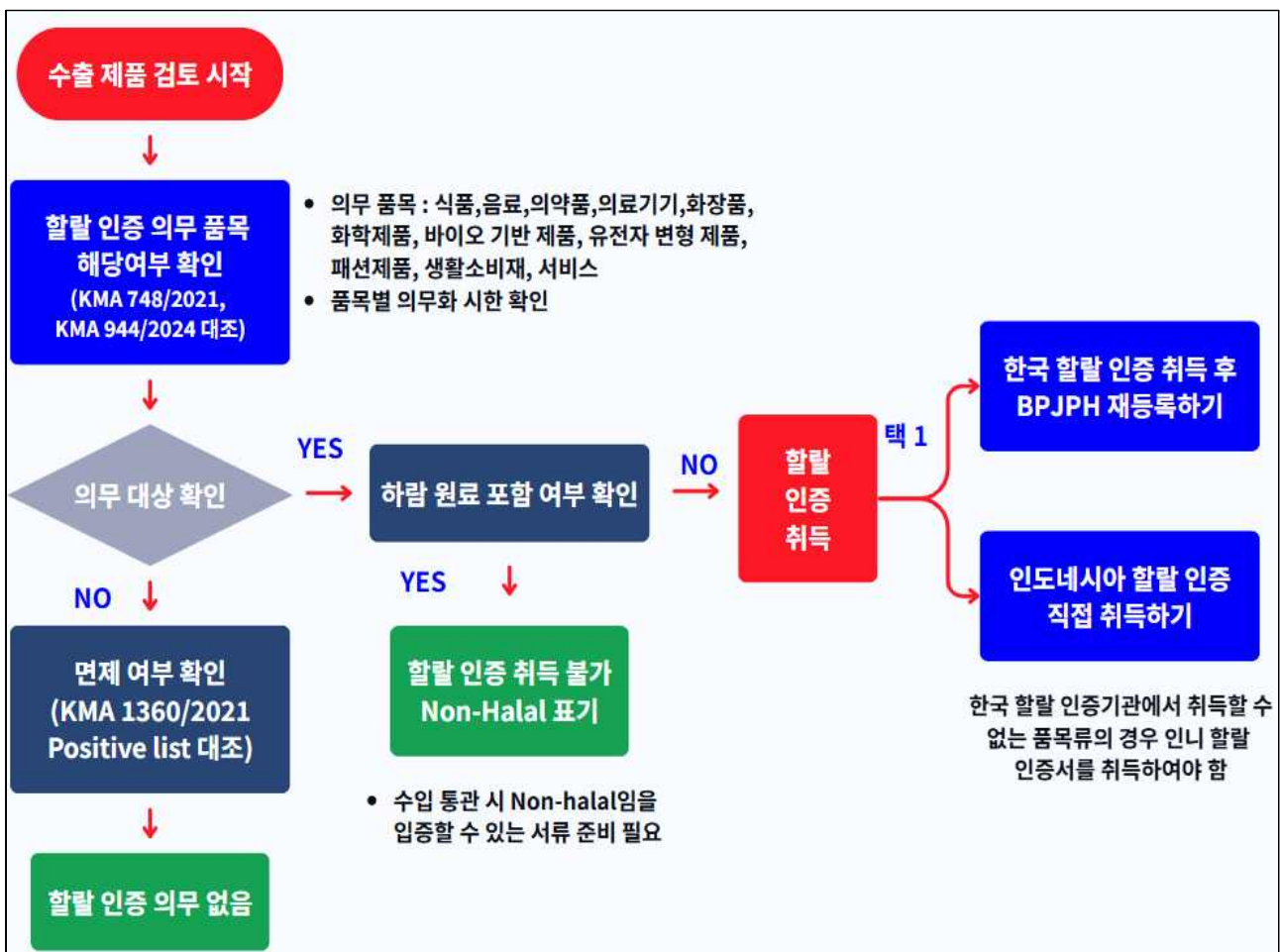
제3장. 할랄 인증 취득 방법

제1절 할랄 인증 대상 판별 기준

□ 의무 인증 대상 품목 판별 흐름도

- (대상 여부 확인) 식품·음료는 종교부 장관결정(KMA No.944/2024), 그 외 품목은 KMA No.748/2021을 통해 의무 인증 대상 여부 확인
- (면제 여부 확인) 의무 대상 품목이라도 KMA No.1360/2021의 면제 목록(Positive List)에 포함되고 자연 상태 또는 최소 가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 의무 제외
 - 면제 목록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비할랄 제품) 하람 원료가 포함돼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품은 관련 기준에 따라 비할랄(Non-Halal) 표시를 제품 포장에 부착한 후 유통

< 할랄 인증 의무 품목 해당 여부 판별 흐름도 >



[출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소비재 분야별 핵심 심사 기준

- **(분야별 기준)** 할랄 인증은 제품군별로 중점 심사 항목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전 해당 품목의 원재료·제조공정·허용 기준을 사전 확인할 필요
- **(화장품)** 인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알코올 함유 제품은 인증 취득이 가능하며, 향료는 완제품 기준 잔류 알코올 함량이 0.5% 미만인 경우 통상 허용
- **(의약품)**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할랄 성분 사용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올라마 협의회(MUI)의 별도 종교적 적합성 판정 필요

< 소비재 분야별 핵심 심사 기준 >

분야	핵심 심사 기준	주요 위험 원료
식품·음료	원재료 출처·도축 방식·교차오염 방지·알코올 잔류 함량 등	젤라틴·카민(E120)·E471·알코올 향료
화장품·스킨케어	동물성 성분 출처·알코올 배합 기준·포장재 접촉 자재	돼지 콜라겐·태반 추출물·동물성 글리세린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캡슐 소재·부형제·생물 유래 성분·알코올 함유량	돼지 젤라틴 캡슐·동물성 스테아린산
화학·생물제품	미생물 배양 기질·효소 출처·발효 공정	돼지 유래 펩톤·비할랄 효소
동물성 소재 소비재	원재료 동물 종류·도축 방식·가죽 처리 공정	비할랄 도축 가죽 혼합 동물성 섬유

[출처: KMA No.748/2021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원재료 추적성 요건, 면제 대상 원재료 포지티브 리스트 활용법

- **(추적성 요건)** 할랄 인증 신청 시 완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첨가물·가공보조제의 출처와 성분을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함

* 원재료 추적성 요건의 주요 내용
- 원재료별 할랄 인증서 또는 성분 분석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를 제출하고, 동물성 원료는 할랄 도축 인증서나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구비
- 식품첨가물·향료 등 미량 원료도 확인 대상이며, 공급업체 변경 시 할랄 심사기관(LPH)에 통보하고 변경 내용에 따른 추가 심사 여부 확인 필요

- **(한국 기업 애로)** 국내 원재료 공급업체가 할랄 인증이나 성분 자료를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제한해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 비밀 유지 협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 후 심사기관이 공급업체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나,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사전 협의 필요
- **(면제 목록 활용)** 종교부 장관 결정(KMA No.1360/2021)의 할랄 인증 면제 원료 목록(Positive List)을 사전에 확인하면 제출 서류와 심사 범위를 줄일 수 있음
 - 다만 면제 원료에 인증 대상 첨가물이나 가공보조제를 함께 사용하면 완제품은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료별 면제 여부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

* 할랄 인증 의무화 면제 원료와 비면제 원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 면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인증 대상 첨가물·가공보조제 포함 시 완제품 전체가 할랄 인증 대상이 됨
- 예를 들어 신선 과채류에 식품첨가물을 추가한 제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증 신청 전 모든 원료를 면제·비면제로 구분해 심사 범위와 준비 서류를 사전 확인 필요

제2절 할랄 인증 신청 절차 및 준비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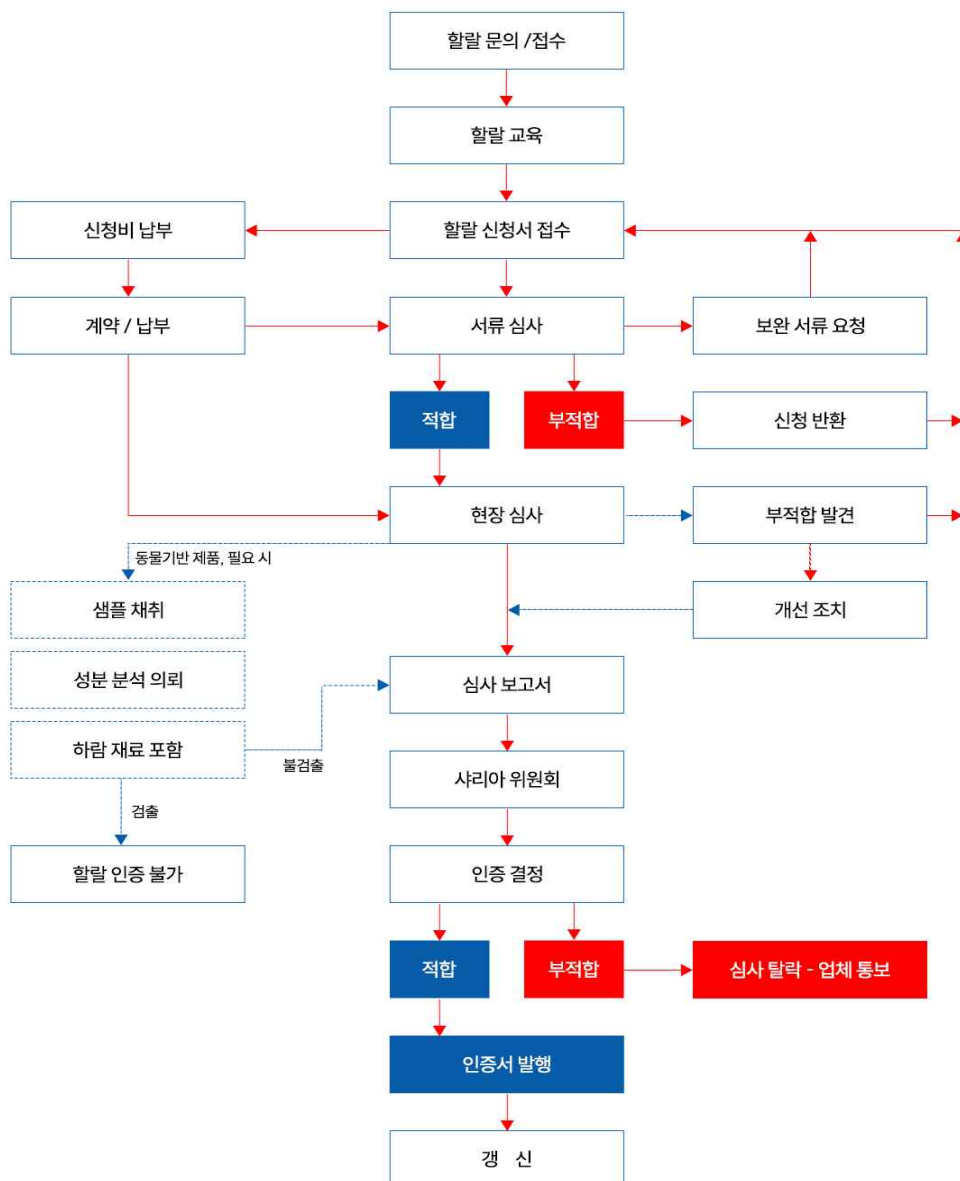
□ 경로 ① 한국 할랄 인증기관 인증 취득 후 인도네시아 BPJPH에 해외 할랄 등록

- (개요)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한국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취득한 후, 할랄인증통합시스템(SiHalal)에 해외 할랄 인증서를 등록하는 방식

< 단계별 핵심 내용 >

1) 한국 할랄 인증 취득 : 인도네시아 공인 한국 인증 기관 선정

- 기관별 인정 품목 범위와 MRA 유효 기한 사전 확인(서류 완비 기준 약 2~3개월 소요)
 - 할랄 인증기관별 갱신 주기, 유효기간별 비용상이 (예시 : 한국 할랄 인증원-1년, KTC-3년)
 - 기관별 신청 절차, 심사 기준, 제출 서류 및 유의 사항 등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 확인 필요
- 한국 할랄 인증 취득 절차 사례 (출처 : 한국할랄인증원)



< 한국 할랄 인증 취득 시 필요한 서류 예시 >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랄 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 등록증 4. 생산 허가증 또는
영업허가서(영업 신고증) 5. 품목 제조 보고서 6. 제품 제조공정도 7. 시험성적서 8. 샘플(생산되는 최소 단위 -
분석과 보관에 필요한 양) 9. 원재료 표기(실제 사용하는
원료 모두 누락 없이 표기) 10. 납품회사 원료의 제조 공정도
및 동물성 원료 미사용 확인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주정을 제조공정에 사용한 경우
(0.5% 이내) - 원료 생산품의
잔류 에탄올 분석 확인서 12. 제조공정 중 효소를 사용한 경우
- 사용된 효소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서류, 효소의
배양액에 대한 원료 리스트,
각 원료의 제조 공정도 및
군주 기탁서 13. HACCP, CMP, GHP, ISO
또는 기타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증서 사본 14. 수입 원료(수입신고필증),
국산 농축산물(원산지 확인 증명서), | <p>수입 할랄 원료(외국 공인 할랄
인증기관의 할랄 인증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할랄 실무자 교육 수료증
※ 그 외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유전자 분석 시험성적서
Non-GMO 확인서, 잔류농약
또는 화학물 시험성적서,
중금속 시험성적서 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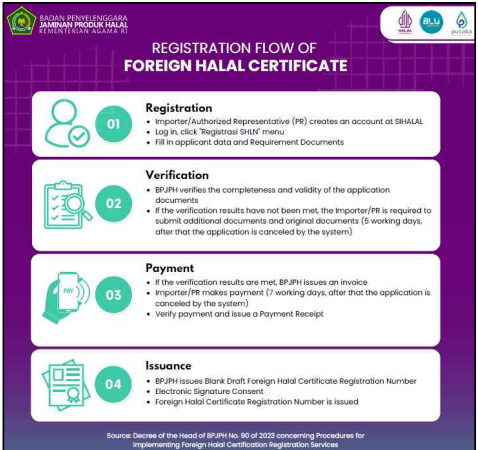
[출처 : 한국할랄인증원]

2) BPJPH에 한국 공인 인증서 등록

- 한국 할랄 인증서 취득 후 SiHalal 포털(ptsp.halal.go.id)에 해외 할랄 인증서를 등록해야 인도네시아에서 유통 가능, 재등록은 수입업자 또는 공식 대리인이 신청 주체가 됨
- 등록비는 인증서당 IDR 800,000(약 7~8만 원), 서류 완비 기준 약 15~20일 내 BPJPH 해외 할랄 등록번호가 발급 (등록증에는 발급기관·등록번호·신청자 정보·제품명·인증 유효기간·기관장 서명·고유 식별코드가 포함)
- 할랄제품보장청의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 절차 안내 링크 :

<https://bpjph.halal.go.id/detail/registrasi-sertifikat-halal-luar-negeri>

< BPJPH 해외 할랄 인증 등록 절차 >

할랄 인증 프로세스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
 01 Registration - Importer/Authorized Representative (IR) creates an account at SHALAL. - Log in, click 'Registrasi SHALAL' menu. - Fill in applicant data and Requirement Documents 02 Verification - BPJPH verifies the completeness and validity of the application documents - If the verification results have not been met, the Importer/IR is required to submit additional documents and original documents (5 working days, after that the application is canceled by the system) 03 Payment - If the verification results are met, BPJPH issues an invoice - Importer/IR makes payment (7 working days, after that the application is canceled by the system) - Verify payment and issue a Payment Receipt 04 Issuance - BPJPH issues Blank Draft Foreign Halal Certificate Registration Number - Electronic Signature Consent - Foreign Halal Certificate Registration Number is issued	수입업체 / 인도네시아 소재 공식 대리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수입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NIB) - 수입업체가 서명한 신청서 - 참고 정보 - 서류의 진위 및 유효성에 대한 확인서 한국 기업이 작성한 서류 - 한국 기업의 사업 정보(제조업체 명, 제품명, 법인 번호, 주소) - 신청인(수입사/인도네시아 대리인)에게 등록 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 - 인도네시아 관세 구역에 반입될 제품에 대한 외국 할랄 인증서 사본

[출처: BPJPH]

3) BPJPH 해외 할랄 등록번호 및 제품 포장 표시(법적 근거 : PP No.42/2024)

- BPJPH 해외 할랄 등록번호 발급 후 한국 할랄 인증 라벨, BPJPH 등록번호를 병기한 라벨을 제품 포장에 부착하여야 하며, 등록번호는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곳에 표시 필요
- 등록 유효기간은 한국 할랄 인증서 유효기간과 동일, 만료 6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 신청 가능, MRA 협정 만료 시 등록 효력은 사라지므로 관리 필요

□ 경로 ②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인증 직접 취득

- (개요)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공인 할랄 심사기관(LPH)을 선정 → LPH의 현장 심사 → MUI 할랄 적합성 판정 → BPJPH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
- 모든 의무 대상 품목 적용 가능, 원재료와 제조공정에 변경 없을 시 인증 효력 유지

< 단계별 핵심 내용 >

1) LPH 선정 및 사전 준비

- 해외 심사 자격을 보유한 LPH 중 선정
 - SiHalal 본 심사 전 서류 완비가 중요하며 주요 심사기관들을 통해 부족한 내역 조기 발견이 가능한 사전 갭 진단(Pre-audit) 진행 시 부족 내역 사전 대응을 통해 할랄 인증 심사 전체 일정 단축 가능
 - * 사전 갭 진단 서비스 보유 해외 심사 가능 LPH : PT Sucofindo·PT Surveyor Indonesia 등

2) SiHalal 신청 및 서류 검토

- 인도네시아 수입업자 또는 공식 대리인이 SiHalal 포털에 신청 접수
 - 제출 서류 : 제품 성분표·원재료 COA·공정 흐름도(SJPH 기준)·SJPH 매뉴얼·할랄 감독관 지정 확인서·생산 시설 현황서·NIB 등
 - SiHalal 신청 후 5영업일 이내 미응답 시 신청 자동 취소 - 수입업자와 긴밀한 사전 조율 필수
 - BPJPH 서류 완전성 검토(5일) → 유효성 검토(5일) 순으로 진행되며, 미비 시 5일 내 보완 제출 필요

3) LPH 현장 심사

- LPH 감사원이 한국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심사 진행, 감사원 항공·숙박·비자·체재비 전액 기업 부담
- 심사 항목 : 원재료 추적성·생산라인 분리·SJPH 문서 체계·할랄 감독관 운영 현황·포장재 접촉 자재 할랄 여부 등
- 시정조치 발생 시 보완 후 재심사 - 일정 수 주 이상 지연 가능

4) MUI 할랄 적합 여부 판결 및 BPJPH 인증서 발급

- LPH에서 MUI에 감사보고서 제출 → MUI 파트와(할랄 적합 여부 판결) → BPJPH 할랄 인증서 발급
- 전체 소요 기간 : 21~47영업일 (해외 기업 기준, BPJPH 공식)
- 유효기간 무기한 / BPJPH 할랄 라벨 단독 사용 가능

[출처 : 할랄 심사기관(LPH) 인터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심사 지연 요인) 제조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원재료·공정 관련 필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심사 보완과 추가 확인으로 인증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인증 신청 전 제조사·공급업체와 자료 제공 범위를 협의, 필요시 비밀 유지 협약 (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해 대응 필요

< 단계별 핵심 내용 >

주요 원인	세부 내용	대응 방안
원재료 시험성적서(COA) 미비	위험 원료(젤라틴·E120·E471 등) 사전 점검 미흡	심사 전 전 원재료 COA 전수 수집 및 위험 원료 사전 식별·대체
할랄 보증 시스템(SJPH) 문서·공정 불일치	HACCP·ISO 문서와 실제 공정 불일치 / SJPH 전용 문서 미비	할랄 전용 공정 흐름도·핵심 관리점(CCP) 재식별 문서 별도 작성
할랄 감독관 미지정	심사 후반 발견 시 일정 전면 재조정	인증 신청 착수 시점에 감독관 지정 및 SiHalal 교육 선행
공급업체 정보 제공 거부	원료 배합·비율 영업비밀 이유로 협조 거부	사전 비밀 유지 협약 체결 및 정보 제공 동의 확보
포장재·부자재 할랄 미확인	포장용 접착제·코팅재가 심사 대상임을 미인지	제품 접촉 자재 전수 사전 점검

[출처 : 할랄 심사기관(LPH) 인터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제3절 인증 소요 기간·비용 및 활용 전략

□ 경로별 소요 기간 비교

단계 구분	경로 ① 한국 할랄 인증 기관 인증서 취득 후 → BPJPH 재등록	경로 ②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인증 직접 취득
인증 취득	약 2~3개월 (서류 완비 기준)	약 3~4개월
등록 발급	BPJPH 해외 할랄 등록 약 15~20일	포함
총 소요기간	약 3개월	약 3~4개월 이상, 감사원 출장 일정에 따라 상이
주요 지연 원인	서류 미비·원재료 성분 분석서 보완	감사원 출장 일정 조율·시정조치 발생

* 소요 기간은 서류 완비 및 시정조치가 없는 이상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함

[출처: 정부령 PP No.42/2024, BPJPH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인증 비용 구성 및 소요 비용 사례

- (비용 구성) 할랄 인증 비용은 취득 경로에 따라 다르며, BPJPH 직접 인증의 경우 등록·심사 수수료 외에 심사원 출장비와 컨설팅비 등이 추가로 발생
- (비용 증가 요인) 생산 시설과 인증 대상 제품 수가 많거나 원재료 공급망 확인이 복잡할수록 총비용 증가

< 경로별 할랄 인증 취득 비용 구성 >

경로 ① 한국 할랄 인증 기관 인증서 취득 후 → BPJPH 해외 할랄 등록 ○ 한국 할랄 인증기관 비용 : 기관별, 품목별 상이하며 진행 품목 수 등에 따라 견적 상이 - KTC : 공장 기준으로 1개 공장 할랄 인증에 1천만 원(3년 유효)에 동일 공장에서 성분이 다른 제품 추가 인증 시 제품별 추가 30만 원 - KMF : 신규 품목당 1개 공장, 1개 품목일 경우 서류 심사비, 현장 심사비(공장별 부과), 할랄 인증료 포함 약 100만 원 정도 소요 추정 ○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 등록 수수료 : 800,000 루피아 (약 7~8만원 상당)	경로 ②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인증 직접 취득 ○ 인니 BPJPH 등록 수수료 : 인증서 당 12.5 백만 루피아 (약 106만 원) ○ LPH 심사 수수료 : BPJPH 국장령 제14호(2024년)에서 품목별 요율 상한선 규정 < 제품별 LPH 심사 수수료 상한 금액> <table><tr><th>제품</th><th>요율(루피아)</th><th>제품</th><th>요율(루피아)</th></tr><tr><td>가공식품</td><td>6,468,750</td><td>의료기기</td><td>3,937,000</td></tr><tr><td>의약품</td><td>5,900,000</td><td>도축서비스</td><td>3,937,000</td></tr><tr><td>화장품</td><td>5,900,000</td><td>가공서비스</td><td>5,725,000</td></tr><tr><td>백신</td><td>21,125,000</td><td>저장서비스</td><td>5,725,000</td></tr><tr><td>향료및향수</td><td>7,652,500</td><td>포장서비스</td><td>5,725,000</td></tr><tr><td>의류, 액세서리</td><td>3,937,000</td><td>유통서비스</td><td>5,725,000</td></tr><tr><td>가정용품</td><td>3,937,000</td><td>가공/조리없는 판매서비스</td><td>5,725,000</td></tr><tr><td>제품포장</td><td>3,937,000</td><td>가공/조리없는 서빙서비스</td><td>5,725,000</td></tr><tr><td>문구 및 사무용품</td><td>3,937,000</td><td></td><td></td></tr></table> [출처: BPJPH 국장령 제14호(2024년)] ○ 감사원 출장비(체류비, 항공임, 숙박비 등 일체) ○ 컨설팅바사전 겹 진단비 : 선택사항이나 권장, 업체별 상이 ○ 시정조치 관련 재감사 비용 ○ 총비용 : 단일 시설·단일 카테고리 기준 총 2천만원 이상의 비용 소요 추정 * 비용은 1개 카테고리 기준 최대 50개 품목까지 기본 요금.	제품	요율(루피아)	제품	요율(루피아)	가공식품	6,468,750	의료기기	3,937,000	의약품	5,900,000	도축서비스	3,937,000	화장품	5,900,000	가공서비스	5,725,000	백신	21,125,000	저장서비스	5,725,000	향료및향수	7,652,500	포장서비스	5,725,000	의류, 액세서리	3,937,000	유통서비스	5,725,000	가정용품	3,937,000	가공/조리없는 판매서비스	5,725,000	제품포장	3,937,000	가공/조리없는 서빙서비스	5,725,000	문구 및 사무용품	3,937,000		
제품	요율(루피아)	제품	요율(루피아)																																						
가공식품	6,468,750	의료기기	3,937,000																																						
의약품	5,900,000	도축서비스	3,937,000																																						
화장품	5,900,000	가공서비스	5,725,000																																						
백신	21,125,000	저장서비스	5,725,000																																						
향료및향수	7,652,500	포장서비스	5,725,000																																						
의류, 액세서리	3,937,000	유통서비스	5,725,000																																						
가정용품	3,937,000	가공/조리없는 판매서비스	5,725,000																																						
제품포장	3,937,000	가공/조리없는 서빙서비스	5,725,000																																						
문구 및 사무용품	3,937,000																																								

[출처: BPJPH 국장령 제14호(2024년)]

- 감사원 출장비(체류비, 항공임, 숙박비 등 일체)
- 컨설팅비·사전 갭 진단비 : 선택사항이나 권장, 업체별 상이
- 시정조치 관련 재감사 비용
- 총비용 : 단일 시설·단일 카테고리 기준 총 2천만원 이상의 비용 소요 추정
- * 비용은 1개 카테고리 기준 최대 50개 품목까지 기본 요금.

[출처: PT Green Nature Farm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현장 심사 비용)** 한국 생산 시설에 대한 현장 심사 시 심사원의 항공료·숙박비·비자비·일비는 한국 제조업체 또는 인도네시아 대리인이 부담
 - '25년 재무부 규정 제32호에 따라 기업이 숙박을 직접 제공할 경우 심사원 일비 절감 가능, 숙소를 별도로 예약하는 방식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

< BPJPH 인증 취득 시, LPH 감사원 출장 비용 예상 시나리오(안) >

항목	출발(CGK→ICN)	감사1일차	감사2일차	귀국(ICN→CGK)
시나리오 A : 한국 기업에서 숙박 제공 시				
일비	168.40 달러 (421 달러의 40%)	126.30 달러 (421 달러의 30%)	126.30 달러 (421 달러의 30%)	168.40 달러 (421 달러의 40%)
일비 합계	589.40 USD (합계)			
항공료	약 500 ~ 800 달러(자카르타-서울, 왕복)			
비자 수수료	60달러			
숙박비(한국회사예약)	약 100달러/박× 3박= 300달러			
예상 총액	약 1,450~1,750 달러			
시나리오 B : 감사원이 직접 숙박을 예약할 경우(일일 전체 요금 적용)				
일당	168.40 달러 (421 달러의 40%)	421.00 달러 (전액)	421.00 달러 (전액)	168.40 달러 (421 달러의 40%)
일비	1,178.80 USD (합계)			
항공료	약 500 ~ 800 달러(자카르타-서울, 왕복)			
비자 수수료	60달러			
예상 총액	약 1,740~2,040 달러			

[출처: 2025년 재무부 규정 제32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할랄 인증 취득 사례**

- A사 : 티슈, 장갑 제품은 당시 할랄 인증 의무 대상 품목에 미포함이나 시장 경쟁력 확보,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신청
- B사 : PT S사를 LPH 기관으로 선정, PT S사와 사전 심사 절차 진행, 전체 절차는 1.5개월 소요, 공장 및 창고 운영이 분리되지 않은 단일 시설의 경우 총비용은 약 7,000만 루피아(약 610만 원, 감사원 출장비 별도)

[출처: LPH사 인터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정부 인증 지원 제도**

- **(수출 바우처)** 수출 바우처 포털에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할랄 인증 관련 수행기관, 지원 대상 비용 사전 확인 필요
-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중소기업부 사업으로 해외 규격 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 비용의 일부 지원
- **(부처별·산업별 맞춤형 인증 지원)** 산업 관할 부처에서 인증 비용과 컨설팅비 지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지원사업-해외인증 등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취득 비용 지원 (인증 취득비·대행비)
- **(지자체별 해외 규격 인증 지원사업)** 각 시·도 및 경제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 사업에 비해 경쟁률이 낮음
 -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을 통해 지자체별 지원사업 확인 가능

< 수출바우처 진행 절차 >



[출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인증 취득 후 사후 관리 및 유지 비용

○ 인증 경로별 관리 구조 비교

구분	경로 ① 한국 인증 후 BPJPH 해외 할랄 등록	경로 ② BPJPH 직접 인증
유효기간	인증기관별 상이 (주기 관리 필수)	Halal Decree 4년 주기
갱신 비용	최초 인증과 유사 수준	최초 인증과 유사 수준
주요 위험 요인	MRA 만료 시 SHLN 비활성화 가능	주요 사항 변경 시 재취득 필요
등록번호 관리	SHLN 5영업일 내 갱신 의무	SiHalal 등록 정보 상시 유지

※ 참고 사항 : △원재료·첨가물 변경 (대체 원료 포함) △생산 시설 이전·증설·라인 변경 △제조공정 변경
△공급업체 변경 시 즉시 변경 신고 또는 재신청이 필요함

[출처: BPJPH, PT Green Nature Farm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할랄 감독관 운영 및 유지 비용)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업은 할랄제품보장청 (BPJPH)이 인정한 공식 할랄 감독관(Penyelia Halal)을 지정해야 함

- 외국 제조업체는 통상적으로 현지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감독관 역할을 수행하며, 할랄인증통합시스템(SiHalal) 대응, 원재료 변경 검토 및 정기 교육 등을 담당
- 감독관은 무슬림 자격과 역량 인증이 요구되며, 교육비는 1회 약 50만~60만 원 수준
- 기관별 관리비는 상이하며, Surveyor Indonesia는 연간 약 200만 원의 관리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지만 LPPOM MUI는 별도 연간 관리비 없이 서류 중심으로 운영
- 한국 인증기관의 경우 감독관의 무슬림 자격 요건은 없으나 정기 교육이 필요하며, 외부 교육비는 통상 30만~50만 원 수준

제4장. 소비재 분야별 할랄 시장 진출 전략

제1절 식품·음료

□ 시장 규모 및 현황

- (시장 규모) 인도네시아의 할랄 식품 소비지출은 2023년 1,596억 달러로, 전 세계 무슬림 식품 지출의 11.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
- (유통 여건) 할랄 인증 미취득 제품은 현지 바이어의 발주 거부와 유통망 입점 제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 즉석 면 시장은 인도푸드(Indofood)의 인도미(Indomie)가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산 라면은 K-푸드 인기로 힘입어 프리미엄 수입 제품군에서 입지를 확대

□ 마케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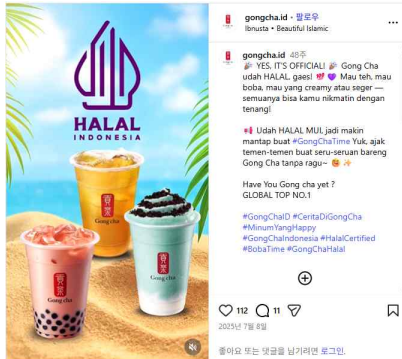
- (신뢰 마케팅) 할랄 인증을 단순 규제 대응이 아닌 원료·위생·품질에 대한 신뢰 요소로 활용하고, 제품 포장과 온라인 채널에서 적극 홍보
- (온라인 진입) Tokopedia·Shopee·TikTok Shop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할랄 필터와 공식 스토어를 활용해 초기 시장 진입 추진
- (파트너 선정) 현지 할랄 등록과 대형 마트·미니 마켓 납품 경험을 보유한 수입업자·유통업체와 협력 필요

□ 식품·음료 분야 할랄 인증 취득 사례

- (주요 사례) 대상·삼양식품·뚜레쥬르·공차 등 진출기업들은 라면·소스·베이커리·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을 바탕으로 현지 유통망과 매장·온라인 채널을 확대
- (시사점) 제품 인증뿐 아니라 원재료 공급망, 생산 시설, 매장 운영 및 소비자 홍보를 연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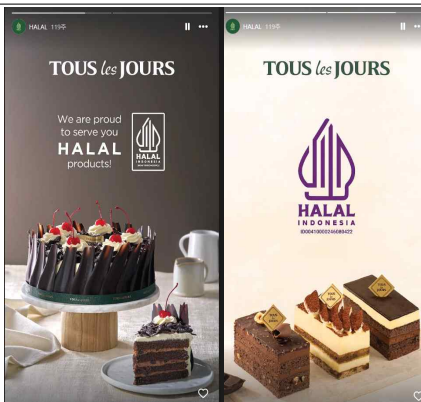
< 식품·음료 분야 할랄 인증 취득 사례 >

구분	내용
 삼양식품 - 불닭볶음면	- 삼양식품은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불닭볶음면 시리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취득하여 운영해 온 한국 라면 업계 최초 사례로, 단순한 서류 인증을 넘어 생산 인프라 자체의 물리적 분리를 구현한 점이 특징 - 익산 공장에서는 돼지고기 함유 제품을, 원주 공장에서는 비 돈육 제품을 별도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라인을 분리하여 할랄 인증 요건인 교차오염 방지를 충족,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인기 라면인 인도미(Indomie)와 직접 경쟁 위치 확보 - 한국 내 비할랄 제품과 할랄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인증 신청 이전에 생산 시설 분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공차

- 공차 인도네시아는 2025년 7월 공식 SNS를 통해 “Gong Cha udah HALAL”을 발표하며 할랄 인증 취득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개, 차·버블티·크리미 음료 등 주요 음료 제품을 무슬림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현지 배달 플랫폼 Go Food에서도 공차 일부 매장 페이지에 “Halal, Bersertifikat” 표시가 확인되며, 이는 음료 프랜차이즈의 할랄 인증이 매장 방문뿐 아니라 배달·온라인 주문 채널에서도 소비자 신뢰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버블티·차 음료와 같이 원재료 구성이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제품도 우유, 크리머, 토핑, 시럽, 향료 등 원료별 할랄 적합성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
- 인도네시아 음료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할랄 인증 취득 여부가 무슬림 소비자의 구매 장벽을 낮추고, 오프라인 매장·배달앱·SNS 마케팅 전반에서 브랜드 신뢰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



CJ푸드빌 - 뚜레쥬르

- 인도네시아 공식 할랄 인증을 획득, 전 매장에서 할랄 인증이 완료된 제품들을 판매 중이며 서부자바 브카시 주에 있는 생산 시설도 할랄 인증을 확보해 할랄 전문 대량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B2B 사업 확대에도 탄력
- 2011년 자카르타 첫 진출 이후 국내 제과 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4년 2월 기준 매장 수 60개를 돌파하며 지속적으로 외형을 확대 중
-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할랄 인증서를 취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비자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상업적 요소로 할랄 인증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임



대상 - 마마수카

- 대상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할랄 인증 의무화 이전부터 현지 인증 취득과 전용 브랜드 운영을 병행해 온 사례로, 단순 수출이 아닌 현지 소비자 맞춤형 브랜드·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시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전용 브랜드 ‘마마수카(MAMASUKA)’를 2010년 론칭, 마요네즈에 대해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을 취득한 이후, 2012년 재래김·햇김·파래김, 2013년 옥수수유·올리브유·당면 등 9개 제품, 2015년 빵가루 등 4개 제품으로 인증 품목 확대 중
- 주요 오프라인 유통망 및 온라인 유통망에 적극적으로 진출

[출처: 각 기업별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제2절 화장품·뷰티

□ 시장 규모 및 현황

- **(시장 규모)**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2025년 약 20억 9,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25~2030년 연평균 4.73% 성장 전망
- **(의무화)** 화장품은 정부령(PP No.42/2024)에 따라 2026년 10월 17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
- **(경쟁구도)** Wardah 등 현지 할랄 뷰티 브랜드가 대중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K-뷰티는 스킨케어·선케어·색조·마스크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트렌드형 브랜드 인지도 확대

□ 마케팅 전략

- **(신뢰·기능성 포지셔닝)** 할랄 인증과 K-뷰티 이미지를 결합해 성분 안전성·위생적 제조·기능성을 강조
- **(성분 투명성)** 동물성 원료, 알코올, 향료, 콜라겐, 글리세린, 태반 추출물 등 민감 성분의 출처와 대체 성분 정보를 명확히 제시
- **(온라인 진입)** TikTok·Instagram·Shopee·Tokopedia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리뷰, 라이브 커머스 및 공식 스토어 운영 확대
- **(소비층 차별화)** 10~20대에는 저가·소용량 색조 제품, 20~30대 도시 여성에는 기능성 스킨케어·선케어·더마 코스메틱 제품을 중심으로 접근
- **(현지 파트너)**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등록, 할랄 인증 및 라벨링 경험을 보유한 수입업자와 협력 필요

□ 화장품·뷰티 분야 할랄 인증 취득 사례

- **(주요 사례)** 스킨케어·더마 코스메틱·헤어케어 등 주요 K-뷰티 제품군에서 할랄 인증 취득 사례 증가

< 화장품·뷰티 분야 할랄 인증 취득 사례 >

구분	내용
 아모레퍼시픽 - 이니스프리	- 아모레퍼시픽 계열 K-뷰티 브랜드 이니스프리는 2024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 취득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Green Tea Seed Serum & Cream, Vitamin C Green Tea Enzyme Brightening Serum, Retinol Cica Ampoule Serum, Collagen Green Tea Ceramide Bounce Cream 등 주요 스킨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할랄 기준 충족 - 이니스프리는 원재료, 생산 공정, 유통 과정 전반에서 할랄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 무슬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K-뷰티 브랜드로 포지셔닝 강화



COSMAX

INDONESIA

코스맥스 - 화장품 제조

- 코스맥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 MUI로부터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할랄 인증을 취득, 현지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할랄 화장품 생산 체계 구축
- 2013년 공장 가동 이후 현지 생산·연구개발 기반을 확대, 2023년 LPPOM MUI Halal Award에서 화장품 부문 “Best Halal System Implementation Award” 수상
- 2024년도에는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말레이시아 자회사 설립, 2027년 보고르에 2차 공장 가동 예정
- 동 사례는 화장품 분야에서 할랄 인증이 개별 완제품 인증을 넘어 원료 검토, 제조공정, 품질관리, 생산 시설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관리 체계임을 보여주는 사례
- K-뷰티 기업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시 BPOM 등록과 할랄 인증을 병행 검토하고, 현지 생산 또는 ODM 협력을 통해 할랄 적합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략 필요
-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로컬 브랜드, 중국 브랜드 등 다양한 국가의 브랜드 화장품 제조와 할랄 인증을 취득



LG생활건강 - 피지오겔

- LG생활건강은 2020년 GSK로부터 피지오겔 브랜드 사업권을 인수한 이후, 피지오겔 일부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취득하고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무슬림 소비 시장으로 수출
- 피지오겔은 민감성 피부·보습·피부장벽 케어를 강조하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할랄 인증을 통해 성분 안전성·피부 친화성·무슬림 소비자 신뢰를 보완하는 포지셔닝 가능
- 동 사례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에서 할랄 인증이 기초·색조 제품뿐 아니라 민감성 피부용 더마코스메틱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더 스킨팩토리 - 쿤달

- 주식회사 에이빌코리아의 쿤달은 2024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시장에 ‘Refreshing Anti-Dandruff Hair Care Line’을 출시하며, 해당 제품이 MUI 할랄 인증과 비건 인증받은 K-뷰티 할랄 헤어 케어 제품임을 홍보
- 쿤달 인도네시아 공식 SNS에서도 ‘Halal & Vegan’ 헤어케어 제품을 강조하고 있으며, BPOM 등록과 자연 유래 성분 이미지를 함께 내세워 무슬림 소비자의 제품 신뢰 확보 추진
- 동 사례는 인도네시아 뷰티 시장에서 할랄 인증이 스킨케어·색조 제품뿐 아니라 샴푸·트리트먼트 등 퍼스널케어 제품군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K-뷰티 기업은 헤어·바디케어 제품 진출 시 성분 안전성, 비건·저자극 이미지, BPOM 등록, 할랄 인증을 결합한 신뢰 마케팅 전략 활용 필요

[출처: 각 기업별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제3절 건강기능식품·의약품

□ 시장 규모 및 현황

- (시장 규모) 인도네시아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2025년 약 29억 4,000만 달러, 의약품 시장은 약 176조 3,000억 루피아 규모로 추정
- (수요 확대) 코로나19 이후 면역력·비타민·허브·웰니스 제품 수요가 늘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전통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 지속
- (의무화) 자연 유래 의약품, 준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 대상
- (진입 요건)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등록과 할랄 인증을 병행하고, 캡슐·젤라틴·효소·동물성 원료·알코올 추출물의 안전성과 할랄 적합성을 함께 검토 필요

□ 마케팅 전략

- (원료 투명성) 캡슐, 젤라틴, 콜라겐, 효소, 추출용매 및 발효 원료의 출처와 할랄 적합성 정보를 명확히 소비자들에게 제시
- (인증 동시 홍보) 제품 포장, 공식 판매채널에 BPOM 등록번호와 할랄 인증 정보 함께 표시
- (웰니스 포지셔닝) 면역력·피로·장 건강·피부 건강 등 기능성 수요와 할랄·안전 이미지 연계
- (유통채널 확보) Guardian·Watsons·Century·Kimia Farma 등 약국·드럭 스토어 입점 시 할랄 인증을 신뢰 요소로 활용
- (온라인 노출) Shopee·Tokopedia·TikTok Shop 등에서 할랄 로고, BPOM 등록 정보 및 원료 설명을 함께 제공

□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분야 할랄 인증 취득 사례

- (주요 사례) 바이오의약품, 항암제 생산 시설, 건강기능식품 및 어린이 영양제 분야에서 할랄 인증 취득 사례 증가

<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분야 할랄 인증 취득 사례 >

구분	내용
 대웅제약 - 의약품	-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을 통해 적혈구 생성 인자 제제 '에포디온'에 대해 인도네시아 LPPOM MUI 할랄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동물세포 유래 바이오의약품의 할랄 인증 사례로 주목 - 이후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이지에프외용액'도 BPOM 판매 허가 및 LPPOM MUI 할랄 인증을 취득하며,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도 할랄 인증이 제품 신뢰도와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한 주요 요건으로 작용함을 확인



종근당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종근당은 인도네시아 제약사 OTTO와 합작해 PT CKD OTTO Pharmaceuticals를 설립하고, 서부자바 치카랑 항암제 생산 시설에 대해 LPPOM MUI 할랄 인증을 취득
- PT CKD OTTO는 인도네시아 최초로 할랄 인증을 취득한 항암제 제약사 사례로, 의약품 분야에서 할랄 인증이 완제품뿐 아니라 생산 시설, 원료, 제조공정, 품질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수반



제너럴바이오

- 제너럴바이오는 2024년 인도네시아 LPPOM MUI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4종과 화장품 25종 등 총 29종에 대한 할랄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씨케이 밸런스 헤모, 씨케이 밸런스 파워, 제너럴 밸런스 식물성 MSM 등 건강기능식품이 인증 품목에 포함
- 동 인증은 각 제품의 원료, 성분, 소재 관련 서류 검토와 제조시설·공정에 대한 심사를 거쳐 취득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할랄 인증이 완제품뿐 아니라 원료와 생산 공정 전반의 검증이 수반됨을 보여주는 사례
- 동 사례는 한국 중소·중견 바이오 기업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동시에 무슬림 소비재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건강기능식품 기업은 제품별 할랄 인증뿐 아니라 원료 공급망, 제조 시설, 성분 서류, BPOM 등록 가능성, 현지 유통채널과의 인증 정보 연계를 사전에 관리 필요



조아제약 - 잘크톤

- 조아제약은 수출 전용 어린이 영양제 '잘크톤 스텝1·2'에 대해 2022년 인도네시아 MUI의 종교적 심의·평가를 거쳐 최종 할랄 판결을 받고,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할랄 인증 취득
-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할랄 인증 제도 개편에 따라 잘크톤 스텝1·2의 할랄 인증 유효기간이 무기한으로 전환됐으며, 원료 및 제조공정 변경이 없는 한 인증 효력 지속
- 잘크톤은 인도네시아 공식 SNS에서 "Halal & BPOM"을 전면 홍보하고 있으며, 아미노산·비타민·아연 등 성장기 어린이 영양 성분을 함유한 한국산 어린이 영양제로 현지 소비자 대상 신뢰도 제고
- 동 사례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시 BPOM 등록과 할랄 인증을 병행해 섭취 안전성, 원료 신뢰도, 부모 소비자의 구매 장벽 완화에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

[출처: 각 기업별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제4절 생활용품·기타 소비재

□ 시장 규모 및 현황

- **(시장 규모)** 인니 홈케어 시장은 2025년 약 44조 3,000억 루피아(약 24억 7,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 세탁·세정·위생 등 생활밀착형 제품 수요가 지속 확대
- **(적용 범위)** 생활용품은 식품·화장품보다 인증 준비가 늦은 분야이나, 2026년 의무화를 앞두고 세제·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의류·신발·가방·가죽제품·종교용품·포장재 등으로 적용 범위 확대
- **(원료 검토)** 동물성 원료, 가죽, 접착제, 코팅제, 향료, 효소, 글리세린 등 비할랄 성분 가능성이 있는 소재의 사용 여부를 사전 점검할 필요
- **(시장 대응)** 현지 대형 소비재 기업은 브랜드·공장 단위의 할랄 관리 체계를 구축 중이며, 한국 기업도 품목별 인증 대상 여부와 유통망 요구사항 확인 필요

□ 마케팅 전략

- **(안심 소비 포지셔닝)** 세제·비누·치약·물티슈·기저귀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서 할랄 인증을 위생성·성분 안전성·가죽 안심 이미지로 활용
- **(우선 인증 제품 선정)** 피부·구강·신체 접촉 제품, 위생용품, 영유아용품 및 동물성 소재 사용 제품을 우선 인증 대상으로 선정
- **(원료 투명성)** 동물성 지방, 젤라틴, 글리세린, 효소, 향료, 가죽, 접착제 및 코팅제의 출처와 할랄 적합성 정보를 명확히 제시
- **(유통망 진입)** 대형 마트·드럭 스토어·미니 마켓·온라인몰 입점 전 BPJPH 인증, 제품 분류, 라벨링 및 비할랄 표시 필요 여부를 점검
- **(온라인 홍보)** Shopee·Tokopedia·TikTok Shop 공식 스토어에서 할랄 로고, 인증 번호, 원료 및 사용 안전성 정보를 함께 제공
- **(가치소비 연계)** 할랄 인증을 비건·친환경·저자극·무알코올·무 동물성 원료 등 가치소비 요소와 결합해 차별화
- **(현지 파트너)** 할랄인증통합시스템(SiHalal) 등록, 인증 유지, 성분·포장 변경 및 유통망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업자·유통업체 선정 필요

□ 생활용품·기타 소비재 분야 할랄 인증 취득 사례

- **(주요 사례)** 한국 기업의 인증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거나, 글로벌·현지 기업을 중심으로 조리도구·가전·퍼스널케어·생활 세정 제품의 할랄 인증 활용이 확대
- **(시사점)** 글로벌 기업의 선제 대응에 비해 한국 기업의 진출은 초기 단계로, 의무화 시행 전 주요 품목의 인증 가능 여부와 우선순위를 조기에 검토할 필요
 - 생활용품 시장에서는 글로벌·현지 기업의 할랄 관리 체계 구축이 확대되고 있어, 한국 기업도 할랄 인증 취득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시장 차별화 요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생활용품·기타 소비재 분야 할랄 인증 취득 사례 >

구분	내용
 샤프 인도네시아 - 냉장고·냉동고 할랄 인증	- PT Sharp Electronics Indonesia는 2018년 MUI로부터 인도네시아 최초로 냉장고·냉동고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제품 소재, 생산 공정, 생산 시설 평가를 거쳐 식품 보관용 생활가전의 할랄 적합성을 확보 - 샤프는 냉장고·냉동고가 식품과 직접 접촉하거나 식품 보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해 할랄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전자제품도 제품 특성에 따라 할랄 인증을 통해 종교적 안심과 품질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Maspion Group - Maxim 프라이팬 조리기구	- 인도네시아 Maspion Group의 조리기구 브랜드 Maxim은 프라이팬 등 조리기구에 대해 MUI 할랄 인증을 취득하고, 할랄 인증 조리기구 이미지를 활용해 국내외 무슬림 소비시장을 공략 - 동 사례는 프라이팬, 냄비, 조리기구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생활용품의 경우 제품 자체가 식품이 아니더라도, 코팅제, 접착제, 윤활제, 세척 공정 등 제조 과정의 비할랄 요소 검토가 중요함을 시사함
 Unilever Indonesia - 홈·퍼스널케어 분야 공장·브랜드 단위 할랄 관리체계 구축	- Unilever Indonesia는 식품, 홈케어, 퍼스널케어 등 다양한 소비재 제품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공장 단위 할랄 보증 체계와 브랜드 단위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결합해 할랄 인증을 생활 소비재 신뢰 확보 수단으로 활용 - Unilever Indonesia는 2025년 Top Halal Award를 수상했으며 Rungkut Factory, Cikarang Factory(Home Care), Cikarang Factory(PC BW) 등 식품 외 홈케어·퍼스널케어 관련 생산 시설도 할랄 인증을 취득하여 생활 소비재 분야에서도 공장 단위의 할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상기 사례는 생활용품·기타 소비재 분야에서도 식품 접촉 제품, 신체 접촉 제품, 세정·위생 제품을 중심으로 할랄 인증이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출처: 각 기업별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제5절 외식·서비스

□ 시장 규모 및 현황

- **(시장 규모)** 인도네시아 음식 서비스 시장은 2025년 약 544억 7,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 도시화·중산층 확대·배달앱 확산·젊은 소비층의 외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추후 외식 및 서비스 시장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사업체 현황)**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24년 음식·음료 제공업체는 약 528만 개로, 음식점·레스토랑·케이터링·음료점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 **(인증 범위)** 외식·서비스 분야는 완제품뿐 아니라 원재료, 조리 공정, 주방 동선, 보관·세척, 조리도구 및 매장 운영 전반이 할랄 관리 대상에 포함

□ 마케팅 전략

- **(매장 인증)** 할랄 인증 매장 및 메뉴를 소비자들이 매장 밖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 무슬림 소비자의 방문·구매 장벽 완화
- **(K-푸드 연계)** 한식·치킨·분식·베이커리 등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바이럴 되는 K-푸드 이미지 및 콘텐츠와 할랄 인증의 신뢰도를 연계하여 브랜드 차별화
- **(운영체계 구축)** 육류·소스·조미료·튀김기름·조리도구·보관 공간·세척 공정 등 주방과 공급망 전반의 할랄 관리 체계 마련
- **(온라인 홍보)** GoFood·GrabFood·ShopeeFood와 Instagram·TikTok을 통해 인증 여부, 대표 메뉴, 인증 번호 및 매장 정보를 적극 노출
- **(종교 시즌 활용)**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라마단 단식 종료 후 저녁에 가족 및 친구들과 식사하는 문화가 있으므로 라마단·이드 기간 이프타르 세트, 가족 메뉴, 단체 주문 및 배달 패키지 등 구성을 통하여 계절 수요 공략

□ 외식·서비스 분야 할랄 인증 취득 사례

- **(주요 사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주요 외식기업들은 현지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현지 매장과 주요 메뉴에 할랄 인증을 적용해 소비자 신뢰를 강조, 매장 확대 중
- **(운영 시사점)** 외식기업은 개별 제품 인증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원재료 공급망, 주방 운영, 조리도구, 보관·세척 및 직원 교육을 포함한 통합 할랄 운영체계 구축 필요
- **(대응 필요성)**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규모 음식점과 노점형 외식업체에도 할랄 인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어, 외식·서비스 기업의 선제적 인증 검토 필요

< 외식·서비스 분야 할랄 인증 취득 사례 >

구분	내용
 Halla - 최초 할랄 한식당	- 자카르타 남부 지역에서 할랄 한식 메뉴와 무슬림 친화적 매장 환경을 내세운 한식당 사례로, 현지 SNS와 리뷰 콘텐츠를 통해 “Halal certified”, “100% halal”, “musala 보유” 등의 요소를 적극 홍보 - 동 사례는 한식당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대중 소비층을 확대하기 위해 돼지고기·알코올성 조미료·비할랄 육류 사용 여부를 명확히 관리하고, 메뉴 구성·원재료·주방 운영·기도 공간 등 무슬림 친화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
 파리바게뜨 - 베이커리 외식서비스	- 파리바게뜨는 2026년 BPJPH로부터 인도네시아 현지 23개 전 매장에 대한 공식 할랄 인증을 취득했으며, 인증 대상은 빵, 페이스트리, 케이크, 핫밀, 음료 등 매장 판매 전 메뉴를 포괄 - 동 사례는 베이커리·카페형 외식 브랜드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무슬림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제품 단위 인증뿐 아니라 원재료 조달, 매장 내 취급, 조리·제공 과정까지 포함한 매장 단위 할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
 DHL Express Indonesia - 할랄 물류 서비스	- DHL Express Indonesia는 할랄 제품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콜드체인 물류, 제품 분리 취급, 수입·수출 규정 안내 등 할랄 공급망 관리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음료·화장품·의약품 등 인증 제품의 운송 단계에서 오염·혼입 방지 필요성을 강조 - 동 사례는 외식·서비스 분야의 할랄 대응이 매장 인증에 그치지 않고, 원재료와 완제품의 보관·운송·포장·유통 등 물류 서비스 전반의 할랄 관리 체계와 연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

[출처: 각 기업별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제5장. 종합 진출 전략 및 실행 로드맵

제1절 한국 소비재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

□ 인도네시아 무슬림 소비자 관점에서 한국 소비재 SWOT 분석

- **(종합 평가)** 한국 소비재는 한류를 기반으로 높은 인지도와 품질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으나, 할랄 인증 부족과 돼지고기·알코올 등 비할랄 성분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주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한국 소비재의 강점·약점 분석 (인도네시아 무슬림 소비자 관점) >

강점	약점
- 한류(K-드라마·K-팝·K-뷰티) 기반 높은 브랜드 인지도 - 품질·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 혁신적 제품 개발력 및 다양한 SKU 구성 - 인도네시아 구매 영향력 80.6% - 조사 대상 30개국 중 1위 (KOFICE/문화체육관광부, 2025)	- 할랄 인증 취득률 낮음 - 다수 중소기업이 인증 미취득 상태 - 돼지고기·알코올 성분 함유 제품 이미지로 인한 소비자 우려 - 국내 원재료 공급업체의 할랄 인증 미취득으로 원료 추적성 확보 어려움 - 할랄 인증 전담 인력·조직 부재 (중소기업 중심)
기회	위협
- 경쟁사 대비 선제 인증 취득으로 차별화 가능 - 비무슬림 포함 전체 소비자의 할랄 인증 신뢰도 상승 추세 - 중산층 확대 및 프리미엄 소비재 수요 증가	- 중국·일본·유럽 기업의 선제적 할랄 인증 취득 및 시장 선점 - 유통채널의 비할랄 제품 분리 진열로 인한 노출 불이익 - 인증 미취득 시 바이어 발주 중단 추세 등

[출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할랄 인증을 브랜드 신뢰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 필요

- **(전략 방향)** 우리 기업들은 할랄 인증을 단순한 법적 요건이 아닌 제품 신뢰도와 시장 차별화를 높이는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증 가시화)** BPJPH 등록번호와 할랄 라벨을 제품 포장, 온라인 스토어, 소셜미디어 및 현지 광고에 명확히 노출
- **(K-브랜드 연계)** ‘한국의 품질 기준과 인도네시아의 할랄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으로 포지셔닝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
- **(소비자층 확장)** 할랄 인증을 원재료 투명성과 위생적 생산을 보여주는 품질 지표로 활용해 비무슬림 소비자 대상 신뢰도도 함께 확보하여 구매층 확대

□ 소비재 분야별 포지셔닝 전략 비교

< 소비재 분야별 포지셔닝 전략 비교 >

분야	핵심 포지셔닝	주요 타깃	차별화 포인트
식품·음료	K-푸드 × 할랄 인증	밀레니얼·Z세대 무슬림	한류 연계 마케팅 + 할랄 인증 병행
화장품·뷰티	K-뷰티 × 할랄 성분 투명성	무슬림 여성 소비자	성분 투명성·비할랄 원료 배제 강조
건강기능식품·의약품	한국 품질 기준 × 할랄 원료	30-50대 건강 관심층	식물성 캡슐·원료 출처 명시
생활용품·기타	할랄 인증 일상 소비재	가정 주부·무슬림 가족	세제·위생용품 할랄 기준 준수 강조

[출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할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 **(인플루언서 활용)** 무슬림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화장품·건강기능식품·식품의 신뢰도와 구매 전환을 높일 필요
 - 협업 전 무슬림 팔로워 비중과 할랄 콘텐츠 적합성을 사전 검토
- **(종교 시즌 마케팅)** 라마단과 이돌피트리(Idul Fitri) 기간 선물 세트·특별 할인·한정상품 등 현지 맞춤형 프로모션 추진
 - 마케팅 캠페인은 시즌 시작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 필요
- **(온라인 채널 선점)** Tokopedia·Shopee의 할랄 필터와 전용 기획전을 활용해 인증 제품의 검색과 이커머스 플랫폼 내 노출을 확대
 - 브랜드 온라인 스토어 내 할랄 인증 번호와 인증 현황을 명확히 표시하고 지속 관리
- **(외식 채널 연계)** 할랄 인증 한식당·프랜차이즈와 협업해 제품 체험과 브랜드 노출을 확대하고 무슬림 소비자 접점을 강화

제2절 현지 유통채널 진입 및 파트너십 구축 전략

□ 유통채널별 진입 전략

- **(채널별 차별화)** 인니 소매시장은 식품·식료품, 건강·뷰티, 온라인 유통 등으로 구분, 채널별 소비층과 할랄 인증 요구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진입 전략 필요

< 식품·음료 소매 채널별 진입 전략 >

분야	주요 유통망 예시	진입 전략
미니 마켓 체인	Indomaret·Alfamart 등	- 인도네시아 도시·농촌 전역에 걸쳐 촘촘하게 분포한 생활 밀착형 채널로, 할랄 제품이 진입에 매우 유리한 구조임 - 할랄 인증 취득 완료 후 현지 총판 계약을 통해 납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초기 진입 시 소수의 핵심 품목 납품 권장
프리미엄 슈퍼마켓	Food Hall·Ohsome·Ranch Market·Farmers Market 등	- 상위·고소득층 소비자를 타겟으로 수입 한국 브랜드 제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채널이며 할랄 인증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 브랜드를 수용하는 편이나, 비할랄 제품은 별도 코너에 분리 진열되어 노출 측면에서 불리함. - 따라서 할랄 인증 취득 제품은 일반 진열대 배치를 통해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포지셔닝과 할랄 인증을 함께 강조하는 전략이 효과적임
대형 마트	Grand Lucky·Transmart·Hypermart 등	- 중산층 대상 대용량·다양성 중심 채널로, 할랄 인증이 사실상 입점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지 총판 또는 바이어를 통한 간접 입점이 일반적이며, 입점 후 프로모션 공간 확보를 위한 현지 파트너의 협상력이 중요함

[출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건강·뷰티 소매채널 별 진입 전략 >

분야	주요 유통망 예시	진입 전략
드럭 스토어	Guardian, Watsons 등	- 건강기능식품·의약품·스킨케어 제품의 핵심 오프라인 유통채널 - 할랄 인증 및 식품의약품청(BPOM) 인증 제품 위주로 취급 - 한국 건강기능식품·더마 화장품 브랜드의 진입에 유효한 채널임
뷰티 멀티숍	Sociolla·Sephora 등	- K-뷰티 수입 브랜드의 핵심 유통채널로, 특히 Sociolla는 PT Socio Bella Indonesia를 통해 수입업자 역할을 직접 수행, 주요 한국 브랜드들이 동 채널을 통해 유통 - Sociolla 입점 시 수입·통관·유통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할랄 인증 취득 제품은 무슬림 소비자 타깃 큐레이션 코너에 별도 노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출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이커머스·온라인 소매 채널별 진입 전략 >

분야	주요 유통망 예시	진입 전략
종합 이커머스	Shopee·Tokopedia·Lazada 등	-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 채널로, 할랄 필터 기능·할랄 배지·공식 브랜드관 운영을 통해 할랄 인증 제품의 검색 노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초기 진출 기업의 경우 오프라인 채널 대비 진입 비용이 적고 데이터 기반 소비자 반응 분석이 가능하여 테스트 마케팅에 적합함
숏폼 이커머스	TikTok Shop	- 라이브 커머스 기반의 급성장 채널로, 인도네시아 밀레니얼·Z세대 무슬림 소비자 대상 유효한 채널 - 라이브 방송 중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할랄 인증 여부를 문의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인증 취득 여부와 등록번호를 방송 중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함

[출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제3절 단계별 실행 로드맵

□ 단기적 대응 -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및 시장 진입 기반 구축

- **(핵심과제)** 2026년 10월 18일 의무화 시행 전 할랄 인증과 현지 등록을 완료해 유통망 진입을 위한 기본 요건 확보

< 단기 실행 로드맵 >

구분	내용
할랄 인증 검토 착수	- 인증 경로(경로 ①·②) 선택 → 한국 내 원재료 공급망 점검 → 할랄 감독관 지정 → 서류 완비 → 인증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경로 ① 기준 최소 3개월, 경로 ② 기준 최소 3~4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할랄 인증 의무 품목인 경우 인증 취득 시작
핵심 품목 선별 우선 인증	- 전 SKU를 동시에 취득하기 보다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판매 가능성이 높은 핵심 품목을 선별하여 인증을 취득하는 전략이 비용 효율적임. 단일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SKU수가 많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니 할랄 인증 취득이 유리
현지 수입업자·대리인 선정	- SiHalal 등록 주체인 인도네시아 수입업자 또는 공식 대리인을 조기에 선정하고, 할랄 인증 재등록·BPOM 등록·유통채널 납품 역할을 협의하여야 함
온라인 채널 선진입	- 할랄 인증 취득 직후 Shopee·Tokopedia 공식 브랜드관을 개설하고 할랄 배지를 표시하여 온라인 노출 우위를 선점

[출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중기 대응 -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브랜드 자산화

- **(핵심과제)** 할랄 인증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확대하고, K-브랜드의 이미지와 연계한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추진

< 중기 실행 로드맵 >

구분	내용
오프라인 유통채널 확장	- 온라인 채널에서 확인된 소비자 반응과 매출 데이터를 근거로 대형 마트·프리미엄 슈퍼마켓 입점을 추진 - Food Hall·Ohsome·Grand Lucky 등 주요 채널별 바이어 미팅을 통해 입점 조건을 협상하고, 현지 파트너의 납품 이력을 활용하여 진입 장벽을 낮춤
라마단·이슬람 명절 마케팅 강화	- 시즌에 맞춘 기획 상품·프로모션을 정례화하고, 할랄 인증 제품을 선물 세트로 구성하여 무슬림 소비자 공략을 강화 - 무슬림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는 것이 유리
추가 품목 할랄 인증 확장	- 단기에 우선 인증한 핵심 품목의 시장 반응을 기반으로, 중기에는 인증 품목을 확대 - 장기 대응을 위해 할랄용 제품과 비할랄 시장용 제품의 생산라인 분리 등 검토

[출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장기 대응 - 현지화 및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 구축

- **(핵심과제)** 인도네시아를 단순 수출시장이 아닌 아세안 할랄 소비재 시장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현지 생산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 확보

< 장기 실행 로드맵 >

구분	내용
현지 합작법인·OEM 생산 검토	- 대응제약·종근당·뚜레쥬르 사례와 같이 현지 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할랄 인증 취득 비용 절감, BPOM 등록 간소화, 현지화 마케팅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음. - 단일 수출기업 단계를 넘어 현지화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에 유효한 장기 전략임 - 해외 할랄 인증 취득 대비 국내 할랄 인증의 경우 비용 및 기간 소요에서 유리
아세안 할랄 허브로의 확장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기반으로 말레이·싱가포르·태국·중동 향 수출 확장 검토 - 목표 시장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신규 의무화 품목 선제 대응	- 2029년(의약품·의료기기 B등급)·2034년(일반의약품·의료기기 C등급) 의무화 시한에 맞춰 해당 품목 수출기업은 중기부터 인증 준비를 선행

[출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제4절 종합 시사점

□ 종합 시사점

- **(시장 진입 요건)** 2026년 10월 17일 이후 할랄 인증 또는 적정 비할랄 표시를 갖추지 않은 제품은 유통 제한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부 바이어의 발주 중단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어 조속한 인증 착수 필요
- **(인증 경로 선택)** 초기 진출기업과 인증 대상 제품 수가 적은 기업은 한국 할랄 인증 취득 후 해외 할랄 인증을 등록하는 방법이 유리, 다품목·장기 진출기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유리
 - 화장품·의약품·생활용품 등은 상호인정협정의 적용 품목 범위 사전 확인

- **(공급망 관리)** 할랄 인증은 최종 제품뿐 아니라 원재료·제조공정·보관·유통 전반을 심사하므로, 원재료 공급업체의 증빙 확보와 변경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
- **(브랜드 자산화)** 한류 기반의 브랜드 인지도와 할랄 인증을 결합해 '한국 품질과 인도네시아 할랄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으로 포지셔닝
 - 할랄 인증을 규제 대응을 넘어 프리미엄 이미지와 장기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
- **(소비자층 확대)** 할랄 인증을 원재료 투명성·위생·안전성을 보여주는 보편적 품질 지표로 활용해 무슬림뿐 아니라 비무슬림 소비자까지 공략 /끝/

●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 일반증서 보기

공공누리 마크 다운받기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 공공누리의 제 4유형 개별조건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000(기관명)'에서 '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000)'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000(기관명), 000(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하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윤리경영 · 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 · 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 **첫째**,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 ✓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 · 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 ✓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 ✓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 ✓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작 성 자

- 자카르타무역관 정현아
- 자카르타무역관 Sasti Khoirunnisa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과 소비재 시장 진출 전략

Global Market Report 26-033

발 행 일	2026년 6월
발 행 인	강경성
발 행 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13
전 화	1600-7119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글로벌사우스팀(02-3460-7673) 자카르타무역관(+62-21-574-1522)

• ISBN: 979-11-402-1794-6 (95320)



